



가족사진란

나는 _____의 _____이다.

CONTENTS

PART 1

스포츠 윤리

1. 스포츠 인권, 인성	008
1. 스포츠 인권	010
2. 기량 개발 못지않은 인성 개발!	013
3. 스포츠인이 가져야 할 본분과 책무	015
4. 우리 사회는 공정과 청렴을 요구한다!	016
5. 기획특집 [Cartoon]	018
-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	018
- 인권 침해 이제는 안됩니다!	020
2. 스포츠 폭력	022
1. 스포츠 폭력	024
2. 학교폭력	029
3. 폭력 관련 위반행위별 규정	033
4. 기획특집 [Cartoon]	036
- 스포츠 폭력 이제 그만!	036
5. 특별취재 [Incident]	040
- 학교폭력에 연루된 스포츠 스타	040
- 스포츠 폭력	042
3. 스포츠 성폭력	044
1. 스포츠 성폭력	046
2. 성폭력 관련 위반행위별 규정	052
3. 기획특집 [Cartoon]	054
- 아시나요? 스포츠 성폭력!	054
4. 특별취재 [Incident]	056
- 스포츠 성폭력	056



PART 2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

4. 승부조작(불법 스포츠 도박)	060
1. 승부조작 예방	062
2. 도박(불법 스포츠) 예방	066
3. 도박(불법 스포츠)	069
4. 불법 스포츠 토트 Q&A	071
5. 기획특집 [Cartoon]	074
-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자신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074
6. 특별취재 [Incident]	076
- 승부조작	076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078
- 도박	080
5. 금지약물 및 도핑검사	082
1. 도핑방지 가이드	084
2. 11가지 도핑방지규정위반	086
3. 금지약물과 도핑검사	088
4. 선수의 권리와 의무	094
5. 특별취재 [Incident]	096
- 아마 선수에게까지 뽀친 도핑	096
6. 음주운전	098
1. 음주운전	100
2. 음주운전 예방	102
3. 특별취재 [Incident]	103
- 음주운전	103



CONTENTS

PART 3

코로나19 방역

7. 코로나19 방역지침	106
1. 정부 방역수칙 및 안내	108
2. KBO 방역 가이드	109
3. 특별취재 [Incident]	112
- 경기중 마스크 착용	112
4. 야구선수들에게 묻는다! 클린베이스볼 Q&A	114

PART 4

선수들을 위한 기타 정보

8. 아마 야구 선수	118
1. 스포츠 온라인 교육 안내	120
2. 대회 관련 징계세칙	122
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124
4.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34
5.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제도	138
9. 프로 야구 선수	140
1. 유해행위 및 이해관계의 금지	142
2. 상벌위원회 규정	148
3. 구장 질서에 대한 규정	149
4.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	150
5. 벌칙내규	151
6. 스피드업	153
7. KBO 표창규정	159
8. 프로야구선수협회 안내	163
9. 프로선수들에게 묻는다! 클린베이스볼 Q&A	168
10. 클린베이스볼 신고센터 및 주요 연락처	170
1. 클린베이스볼 신고센터 및 주요 연락처	172
2. 자료 출처	176



CLEAN BASEBALL

함께하는 야구,
공정한 야구



— PART 1 스포츠 윤리

1. 스포츠 인권, 인성
2. 스포츠 폭력
3. 스포츠 성폭력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No. 1 클린스포츠

01

스포츠 인권, 인성

1. 스포츠 인권
2. 기량 개발 못지않은 인성 개발!
3. 스포츠인이 가져야 할 본분과 책무
4. 우리 사회는 공정과 청렴을 요구한다!
5. 기획특집 [Cartoon]
 -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인권 침해 이제는 안됩니다!



chapter
01

스포츠 인권

스포츠 인권이란?

스포츠 인권은 크게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와 '스포츠 활동 내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스포츠 인권 현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스포츠 분야의 신체·언어적 폭력·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체육 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의미와 신체 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하여 '스포츠 인권 현장'을 제정했다. 스포츠 인권 현장에 명시된 스포츠 인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 제3장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 제4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다.
- 제5장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 제6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 제7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유형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유형으로는 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이 있다.

폭력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자극을 고의적으로 행하는 공격 중에서 신체적인 공격 행위 등과 같이 물리적 강제성이 포함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 가둬 두는 것
- 겁을 먹게 하는 것
- 강요하는 것
-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 가이드북 22p 스포츠 폭력 참조

성폭력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이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포함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거로 한다.

* 가이드북 44p 스포츠 성폭력 참조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예로는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젠더 기반 폭력이란?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인 미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을 지칭한다.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과 밀접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배우거나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성)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사례

스포츠계에서는 학생들 또는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도자 A는 경기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경기를 졌으니 오늘은 집에 갈 생각하지 마", "너 때문에 졌잖아." 등 수시로 폭언을 했다.
- 지도자 B는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선수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폭행을 했다.
- 지도자 C는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강제 압수해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 지도자 D는 선수의 집중력이 떨어져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선수의 이성 교제와 외출을 금지시켰다.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예방법

스포츠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여기서 스포츠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스포츠 환경을 바라보는 것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과 입장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데는 스포츠 인권 및 인성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chapter 02

기량 개발 못지않은 인성 개발!

스포츠와 인성의 관계

스포츠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끼리 속력, 지구력, 기능 등을 겨루는 것을 말하고, 인성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한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은 '존중'과 '배려'이므로 스포츠와 인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인들은 도덕성, 예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항상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스포츠에서는 운동 능력뿐 아니라 정서 조절 능력이 요구된다. 경기 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대처함으로써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 협동심, 배려, 끈기, 집중력, 리더십, 성취감, 자신감과 같은 다양한 인성 덕목을 배운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해 배워야 할 가치(인성)를 도외시한 채 승패에만 집착하는 것은 진정한 스포츠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인성은 인생 최고의 자산!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고 한다. 경기 중에는 여러 다양한 기록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이런 경기 결과만이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인성 역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기량은 꾸준한 노력을 바탕이 되어야만 향상되듯이 인성 또한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양이 필요하다. '인성이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인성으로 '마음의 곳간'을 채워 나가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인성이 먼저다

최근 스포츠계는 음주 운전, 성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승부 조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량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포츠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태된다.

스포츠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어울려 하는 것이다. 즉, 온리(only)가 아니라 위드(with)의 개념이다. 따라서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포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명심하고 스스로 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만 깨끗한 야구 경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인성의 중요성

야구선수의 경기와 일상, 은퇴 후의 모습은 유·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렇기에 스포츠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행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선수들의 생활이 팬들에게 가까이 보여지는 만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인성, 윤리 의식 역시 운동선수로서 경기력 향상만큼이나 발전시켜야 할 덕목이다.

chapter 03

스포츠인이 가져야 할 본분과 책무

공인으로서의 자세

운동선수는 각자 자신이 사회 다양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인(公人)'은 '사인(私人)'의 반대말로, 공인이라는 말에는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가 내포돼 있다. 따라서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여야 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팬을 대하는 자세

공인이 되면 대중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다. 또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불특정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인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무게인 것이다. 이러한 신분을 망각하고 운동선수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팬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대중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뿐, 보답하려 하지 않으면 언젠가 팬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말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깨닫고 언제나 품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쌍방향이어야 한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은 반드시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돌려 줘야 한다. 어떠한 방식이든 항상 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팬들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사랑받는 야구 선수, 더 나아가 함께하는 야구를 만들 수 있다.

chapter
04

우리 사회는 공정과 청렴을 요구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두 가지 축, '공정'과 '청렴'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두 가지 축은 '공정'과 '청렴'이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들은 공정, 청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공정과 청렴 그리고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의 함양은 성숙한 KBO 리그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치임을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부터 변해야 한다

최근 들어 스포츠의 국가주의적 측면보다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가 주목을 받음으로써 성적과 결과뿐 아니라 노력과 투지, 공정과 청렴 역시 중요해졌다. 점차 스포츠를 인간의 자아실현,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적 활동과 문화로 여기며 대중의 관심 또한 선수의 실력을 넘어 개 개인의 성품 영역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관심 속에서 야구 선수들은 프로 선수로서,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는 변하고 있고, 스포츠인에게 요구하는 가치 또한 변하고 있다. 경기에 이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발맞춰야 한다.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인성



스포츠 예절

스포츠인은 항상 타 선수 및 팬 등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기윤리 준수

경쟁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규범의 준수와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공정한 경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을 위한 활동

깨끗한 야구 경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클린베이스볼 실천' 및 팬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야구 선수가 갖춰야 할 마음자세



FOR FANS

'팬이 없으면 야구도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팬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무엇이 팬을 위한 일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BY FANS

'야구는 팬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팬을 대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팬의 성원에 보답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WITH FANS

팬, 선수, 구단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는다. 야구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이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건 1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야구

전지훈련 중

우리 몰래 숙소 밖으로 나가서 놀다 올 텐데 어때?

그래 같이 가자!

애들이랑 좋은 데 놀러가기로 했어.

훈련 끝 ?

미안. 너희들이나 잘 갔다 와. 난 그냥 야구가 더 좋아.

내일 훈련을 위해 숙소에서 쉬래.

너무해!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 좀 빠지면 어때?

흠.

너만 너무 유난댄대!

이봐! 우리도 야구를 좋아한다고!

내 꿈은 평생 야구를 하는 거야. 야구가 나의 삶의 목표야. 내 인생 그 자체라고.

잘 기억해. 애들아.

단 한 번 허용한 유혹의 손길이, 단 한 번의 가벼운 선택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해.

우리의 청춘이 삶의 목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아야.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

실망이야!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인생에서 야구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 기억해!

알았지?

“선수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KBO] 클린베이스볼 실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kFZNDzcoqU>



인권 침해 이제는 안 됩니다!

사건 2 관행이 되어 버린 인권 침해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예방법

스포츠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여기서 스포츠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스포츠 환경을 바라보는 것'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과 입장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데는 스포츠 인권 및 인성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02

스포츠 폭력

1. 스포츠 폭력
2. 학교폭력
3. 폭력 관련 위반행위별 규정
4. 기획특집 [Cartoon]
 - 스포츠 폭력 이제 그만!
5. 특별취재 [Incident]
 - 학교폭력에 연루된 스포츠 스타
 - 스포츠 폭력



chapter
01

스포츠 폭력

폭력이란?

권력(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일정 장소에 가둬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등을 말한다.



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가하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밀치기, 발로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합, 얼차려 등



방관자 입장의 폭력

-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른체 하는 것,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
- 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하기, 눈 감아주기, 도움 요청 거절하기, 묵인하기 등



정신적 폭력

-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

① 언어적 행위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 (고함과 욕설, 외모 비하, 헐박 등)

② 관계적 행위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는 것 (무시하기, 따돌리기, 비웃기 등)

③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심부름 시키기, 음주 또는 흡연 강요하기, 자유 시간 통제하기 등)

예방법

스포츠 폭력의 원인

폭력의 재생산

- 지도자, 선수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대물림됨
- 무의식적, 의식적 폭력의 악순환

목인

-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보복 당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목인

정당화

- 경기력 향상, 정신력 강화, 집단 응집력 강화의 명목으로 폭력이 정당화됨
- 지도자, 동료, 선후배 사이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의해 정당화됨

스포츠 폭력 예방 행동 지침

경기장 및 훈련장

- 경기력 향상 또는 팀의 단합을 이유로 기합이나 가혹 행위(구타와 욕설)를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선수 개인의 가방과 훈련 장비는 스스로 관리하고, 다른 선수에게 들게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합숙 및 일상생활

- 다른 선수에게 음주와 흡연을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 평소 특정 선수의 외모와 말투, 행동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대처법

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

01 사건 발생
안전 확보, 응급 대응, 상황 파악하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한다.
증거 확보와 신체적 안전을 위해 외상 진료 및 증거 사진 확보 등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02 사건 신고
상황 신고하기,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건에 대해 동료, 지도자, 부모님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03 초기 대응 및 긴급 조치
증거 확보하기, 치료하기



사건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을 기록하여 사건을 조사, 진행하는 분들에게 협조한다.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나 심리적인 상처가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04

사건 조사 및 처리
증거 확보하기, 사건의 처리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완료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기관의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05

사후 관리



안전한 스포츠인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다.

스포츠 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02-572-8411
스포츠윤리센터	1670-2876
KBO클린베이스볼센터	02-3460-4699

※ 자세한 안내는 172p 참조.

chapter

02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제정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예방법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그 행동을 쉽게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단호하게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참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대응 방법 및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대응 방법

-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자책하지 않는다.
- 폭력적인 언어로 맞받아치지 않는다.
- 만약 도에 지나친 욕설이나 협박이 가해질 경우에는 직접 싸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한다.
- “싫다.”라고 말하고, 단호한 태도로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한다.
-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폭력적인 학생을 자극하지 않는다.
- 험담이나 악성 소문 등에 연루됐을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 소문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나와 통하거나 나를 배려해 주는 다른 친구와 어울린다.

학교폭력 예방법

- 평소 폭력적인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다.
-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 둔다.
- 외출 시에는 가족에게 만나서 사람과 장소, 목적, 귀가 시간을 사전에 알린다.
- 소지품이나 돈을 자랑하지 않는다.
-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거나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다닌다.
- 청소년 유해 업소 지역에 출입하거나 거리를 불필요하게 배회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이 있다. 과거에는 폭력 서클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주를 이뤘고, 폭행, 금품갈취 등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많았으며,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강제적인 심부름(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협박, 놀림 등 정신적 폭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외에도 인터넷, 핸드폰, SNS 등을 활용해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방법 및 예방법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정보 통신망과 기기를 이용해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영상 유포, 사이버 갈취, 명예훼손, 따돌림 스토킹 등이 있다. 사이버 폭력 대응 방법 및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방법

-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해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관한다.
- ID 및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 교사 또는 부모를 통해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학교에 중재 요청을 한다.
-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법

- 누구라도 사이버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항상 생각한다.
-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룬다.
-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구한다.
- 확신할 수 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정보는 함부로 게시하지 않는다.
- 평소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 낯선 사용자나 가해자의 메일 계정 접근을 막는다.

폭력의 구성 요소



힘의 불균형

관계 안에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음. 주로 강자가 약자를 향해 폭력을 행사함



반복성

피해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실행함



행위성

의도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모든 폭력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신고 및 상담처

구분	상담 기관	연락처
전화 상담 및 신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영상 유포 차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기록부에 남게 되며, 이는 추후 KBO 신인 드래프트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chapter 03

폭력 관련 위반행위별 규정

KBSA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3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 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 내용(예시)
다.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 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홍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2회 이상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정지 2년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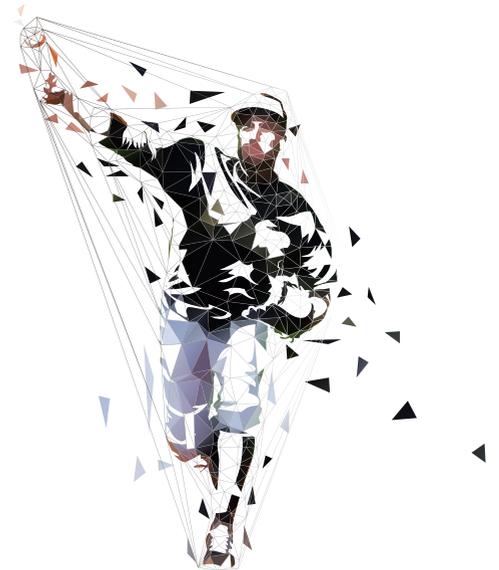
KBO 규정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규정(KBO규약 제 151조)

- 가정폭력, 경기 외적 폭력
 - 출장정지 30경기이상, 제재금 500만원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상대편 선수 또는 심판위원을 구타하여 퇴장당했을 때
 - 제재 :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빈불과 폭행 등의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퇴장 당했을 때
 - 제재 :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스포츠 폭력 이제 그만!



사건 1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관습



한때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된 적이 있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앞세우면서... 스포츠 분야의 경우에는 그 경우가 더욱 심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력은 대물림되었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일쑤였다. 신체에 가해지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마음에 남겨진 폭력이 더 아플 수도 있다. 그 어떠한 폭력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폭력은 한 선수의 신체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팀과 사회에도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2 폭력의 방조나 방관도 또 다른 폭력이다!



폭력 행위 및 처벌

운동용 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 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홍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영구제명

* (KBSA)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 특별취재 [Incident]

학교폭력에 연루된 스포츠 스타



2021년 폭로글이 SNS상에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현재 스포츠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L 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과 피해 사실이 담겨 있었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한 자세한 폭로 글이 기사화되면서 공론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L 선수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학교폭력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을 올렸는데도 L 선수에 대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공론화가 되고 나서야 반성문을 올렸고,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반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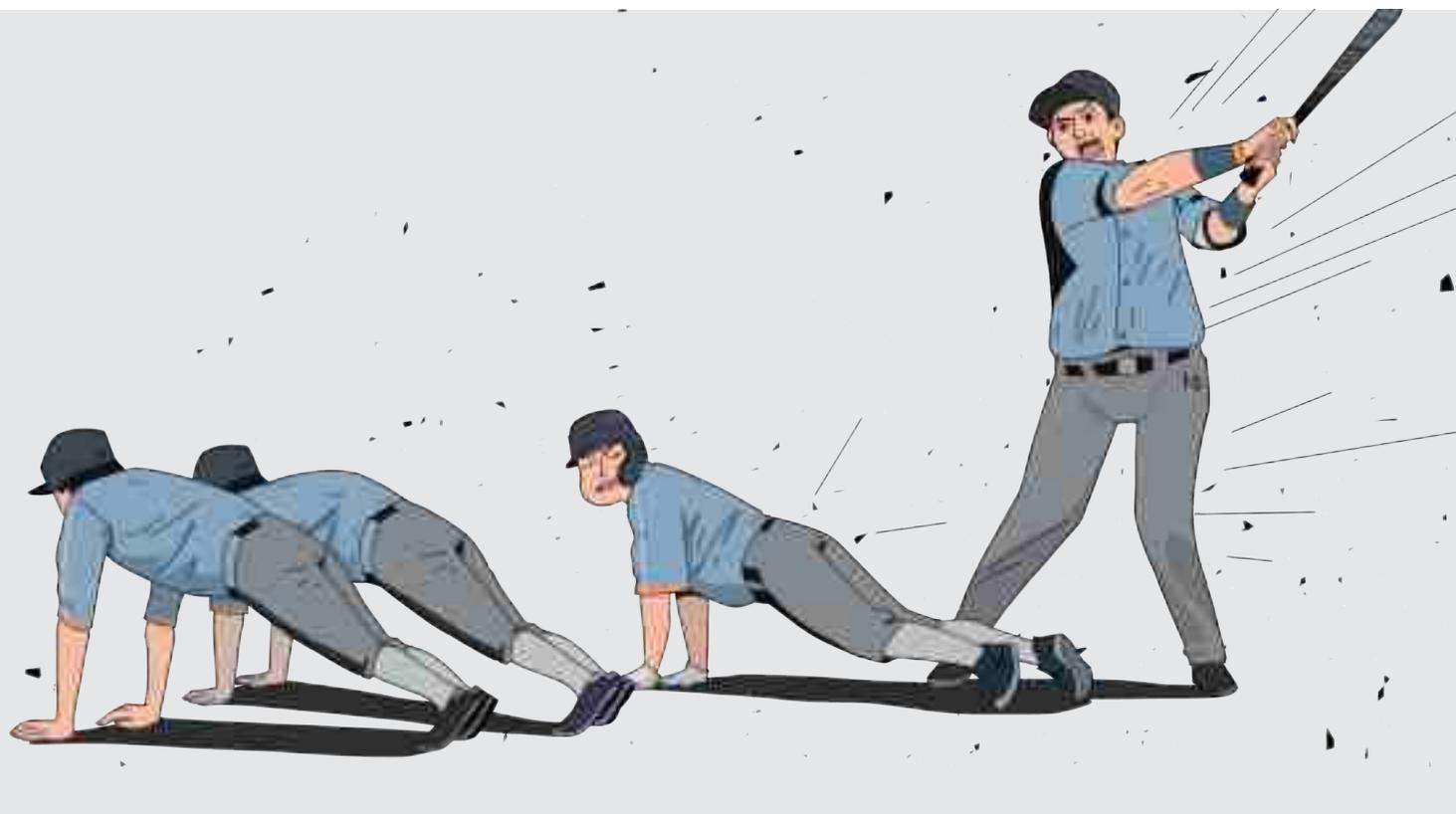
문에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결국 L 선수가 속한 스포츠팀은 자체적으로 무기한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고, 스포츠험비는 이와 별개로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L 선수는 과거 학생시절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지금까지 인기 스포츠스타로서 쌓아올린 명예와 인기를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더 이상 국내에서 운동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선수라는 불명예를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별취재 [Incident]

스포츠 폭력



2017년 8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수를 폭행한 아마추어 야구 지도자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D 대학 A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10년', E 초등학교 B 전 감독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의 처분을 내렸다. 한창 성장할 시기의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력이 있기에 더욱 무거운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인터넷에서 15초 분량의 동영상 하나가 주목을 끌었다.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야구선수로 보이는 사람을 주먹질과 발길질로 무참하게 폭행하는 장면이었다. 알고 보니 D 대학 야구부의 A 감독과 학생선수가 주인공이었다. 영상이 공개된 뒤 A 감독은 학교에 사표를 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5월, E 초등학교 B 감독이 아동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전격 사퇴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감독이었기에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B 감독의 폭력은 혼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야구부원 C 군이 대표적인 피해자였다. 번트 연습에서 스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 11살 어린 선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감독에게는 '상담 위탁 40시간'이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을 뿐이다. 게다가 사퇴 이후 다른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밝혀져,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상처를 주기도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도 선수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소속 학교에 대해서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03

스포츠 성폭력

-
1. 스포츠 성폭력
 2. 성폭력 관련 위반행위별 규정
 3. 기획특집 [Cartoon]
 - 아시나요? 스포츠 성폭력!
 4. 특별취재 [Incident]
 - 스포츠 성폭력



chapter
01

스포츠 성폭력

스포츠 성폭력이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입니다

1. 동의는 기본적으로 “예”와 “아니오”로 나뉩니다. 동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선배나 지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를 이끌어 내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4. 협박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얻어 낸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
5.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는 동의가 아닙니다.

성폭력의 유형



신체적 성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성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신체적 성 학대 행위를 하는 것

- ①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로 넣는 것
- ② 성추행
성적인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어나는 간음 외의 성적 가해 행위



정신적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 또는 기타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 ①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 평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말과 행동 등(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저, SNS 등)
- ② 시각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2차 피해

피해자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소문 퍼뜨리기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예방법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



힘의 차이

- 물리적인 힘 또는 사회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
- 직접적인 성적 가혹 행위 뿐 아니라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성적인 결정권의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성차별적 문화

-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고정된 성 관념, 성 역할을 기반으로 특정한 언행이 강요되거나 금지됨
-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과 탄압이 존재할 수 있음



왜곡된 성 인식

- 상대방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대상화하는 경우가 있음
-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해를 가함

스포츠 성폭력 예방 행동지침

경기장 및 훈련장

- 경기 및 훈련 중 '잘해 보자(화이팅)' 또는 '칭찬'의 의미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껴안기, 엉덩이 두드리기, 팔로 감싸기 등)를 하지 않는다.
- 훈련 중 다른 선수와 마사지 또는 자세 교정의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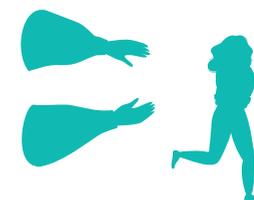
합숙 및 일상생활

-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 각종 성인 사이트 링크)을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 감독 및 코칭 스태프와 경기 및 훈련 시간 외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

대처법

01

사건 발생
안전 확보



더 큰 위험이나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상황을 즉시 벗어나야 한다.

02

사건 신고
응급대응, 증거 확보하기



성폭행의 경우 불편하더라도 몸을 씻지 않고, 피해 옷차림 그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03

상황 신고하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건에 대해 동료, 지도자, 부모님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04

사건 조사 및 처리

치료하기, 조사의 진행, 사건의 처리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나 심리적인 상처가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완료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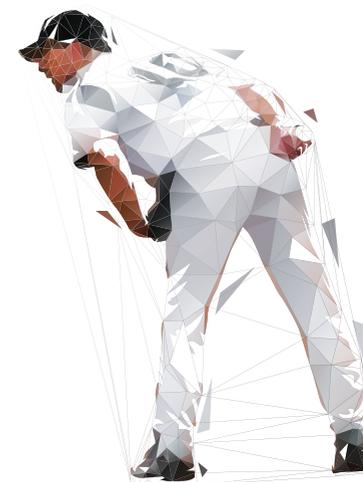
사후 관리



안전한 스포츠인으로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다.

(성)폭력 신고·상담 전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588-912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형)	02-3672-0365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02-572-8411
KBO클린베이스볼센터	02-3460-4699



chapter
02

성폭력 관련 위반행위별 규정

KBSA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1. 일반기준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 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 내용(예시)
라.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등
마.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 영구제명
사. 성추행 등 행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아. 성희롱 등 행위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KBO 규정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규정(KBO 규약 제 151조)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성범죄	감독, 코칭스텝	영구제명, 1년 이상 실격처분, 출장정지 100경기 이상, 1,000만원 이상 제재금
	선수	영구제명, 1년 이상 실격처분, 출장정지 72경기 이상, 1,000만원 이상 제재금

아시나요? 스포츠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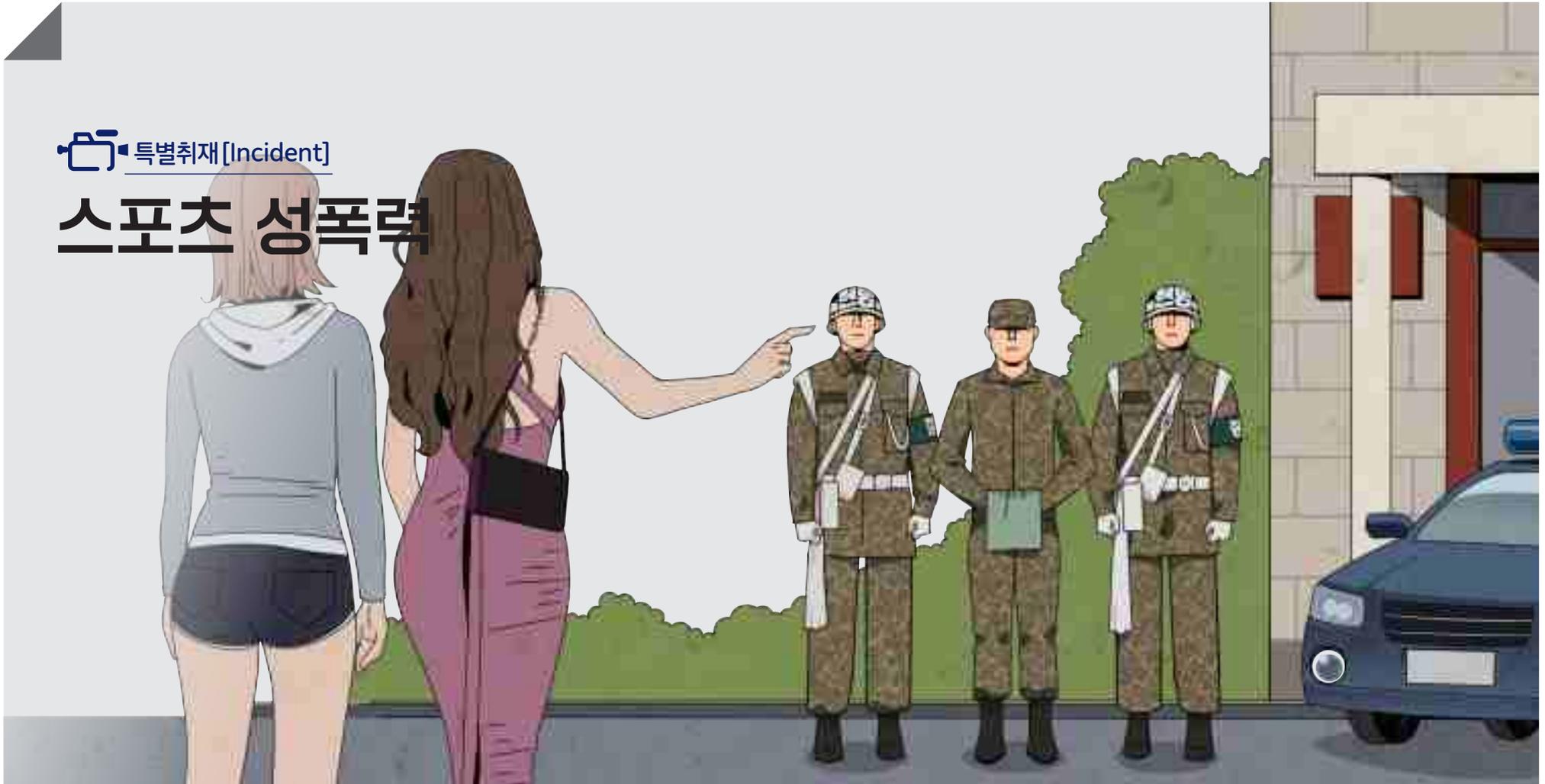
사건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 감추기 급급하고, 사건이 밝혀져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왜곡된 성 의식과 일그러진 가치관이 성폭력의 온상이 되어 왔다. 위계적 질서 의식이 강한 스포츠에서 지도자나 선배가 저지르는 성폭력은 선수의 인격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강간이나 추행만이 성폭력은 아니다. 음란한 말과 음침한 시선도 성폭력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범죄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취재 [Incident]

스포츠 성폭력



프로야구의 A 선수가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여성 두 명이 A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성폭력 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소속 구단에서 뛰고 있던 시기였고, 고소를 당한 것도 훈련소에 있을 때였다. 그렇지만 당시 A 선수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 검찰이 사건을 맡은 것이었다. A 선수가 군 검찰 조사를 받으

면서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 퓨처스리그에 출전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또 소속구단이 성폭력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A 선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기소유에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KBO는 프로야구 선수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A 선수에게 30경기 출장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

CLEAN BASEBALL

함께하는 야구,
공정한 야구



PART 2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

4. 승부조작(불법 스포츠 도박)
5. 금지약물 및 도핑검사
6. 음주운전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No. 1 클린스포츠

04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1. 승부조작 예방
2. 도박(불법 스포츠) 예방
3. 도박(불법 스포츠)
4. 불법 스포츠 토토 Q&A
5. 기획특집 [Cartoon]
 -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자신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6. 특별취재 [Incident]
 - 승부조작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 도박



chapter
01

승부조작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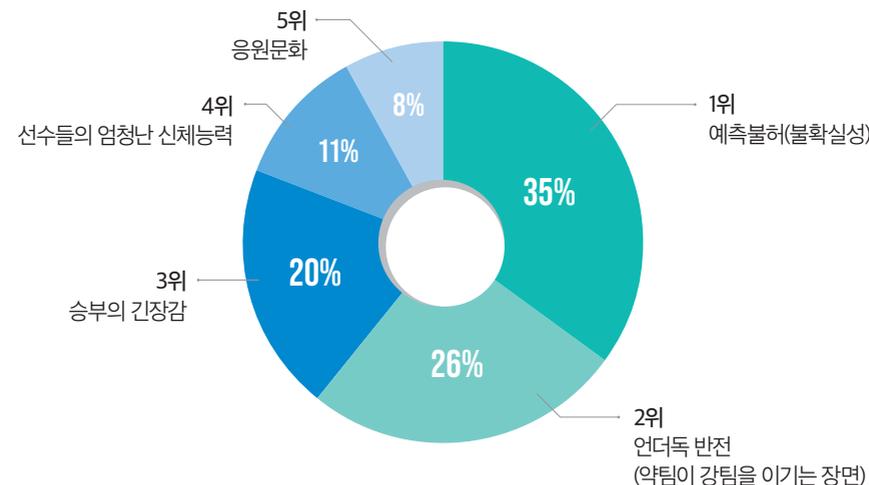
스포츠경기에서 선수, 감독, 심판 등 경기의 참여자가 경기 중 일부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의 최종 결과나 과정을 미리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승부조작을 왜 스포츠의 본질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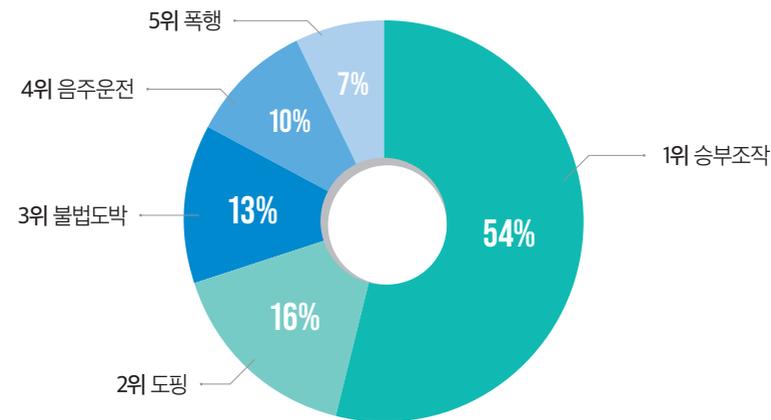
이유는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일정한 경기규칙하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며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를 재미있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중 가장 엄벌해야 하는 부정행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WHY? 이유는 응원한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 출처 : 2020년 스포츠윤리교육 강의자료(한국프로스포츠협회)

승부조작 발생원인

1. 상급학교/상급(실업)팀 진출을 위해
(아마추어선수들이 많이 해당)
2. 인간관계에 의한 승부조작
(선후배, 조직폭력배 연계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리 형성)
3. 금전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본 승부조작 실태



※ 출처 : 성인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승부조작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전민수 외,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16.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프로·아마추어 전 운동종목 승부조작 적발 시 형사처벌(2014. 7. 29. 시행)
도박이용자·홍보·경기정보제공자 등 처벌 규정 신설(2012. 2. 17. 시행)

구분	국민체육진흥법
부당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실행한 자	징역 7년 / 벌금 7천만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요구, 약속한 자	징역 5년 / 벌금 5천만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제공을 약속한 자	징역 5년 / 벌금 5천만원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징역 5년 / 벌금 5천만원

승부조작 구조와 불편한 진실

전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조직 폭력배 → 자금 제공 → 수익 → 적발 시 도피, 도주
전직 선수 및 지도자, 기타 관계자 → 금품, 승부조작 의뢰 → 수익 → 적발 시 징역, 벌금
가담선수(현직 선수, 감독) → 승부조작 → 수익 → 적발 시 징역, 벌금, 영구제명, 명예실추, 재기불능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선수가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큰 구조!**
징역과 벌금 이외에 영구제명, 비난, 불명예 모두 선수의 몫이다.

- ※ <KBO 별도규정>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142p 참조
- ※ <신고하기> 클린베이스볼 신고센터 및 주요 연락처 172p 참조

chapter
02

도박(불법 스포츠) 예방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도박행위의 조절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행위이다.



우연한 이익이나 행운을 바라고, 금품을 걸고 스포츠 승패에 내기를 거는 것이다.

(불법)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이유

1.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중 하나로, 10대 청소년부터 도박을 시작
2.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 분석을 통한 놀이이지, 도박은 아니다”라는 인식
3. 자신이 직접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길 수 없는 구조)
4. (불법) 24시간 365일 도박 가능, 베팅 경기수가 굉장히 많음
5. (불법) 환금률, 배당률이 합법 도박보다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움



도박에 대한 법률 조항

형법 246조, 247조에 의거하여 7대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형사처벌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 7대 사행산업 : 사행산업 복권, 소싸움,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 체육진흥 투표권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

연도별 불법스포츠도박 추정액 (단위: 억 원)



※ 출처 : 2021년 3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

* 2020년의 경우, 전 세계 스포츠가 약 50일간 중단되어 스포츠 베팅 시장이 정체되었던 상황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이길 수 없는 구조

승부조작, 경기조작의 근원

청소년이용자, 도박중독자 양산

또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수단

조직폭력배 연계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리 형성

팬들은 프로선수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법, 불법도박 여부를 떠나 가능하면 도박과 관련된 자리에 가지 않는 것과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투표권의 구매 제한

-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는 자
 - ① 투표권 발행사업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 ②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문체부)
 -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관계자
 - ④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 ⑤ 그 밖에 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금지조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2항
벌칙조항 제48조 제5호(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최고 5,000만원 이하
 - ①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신고 시
 - ② 승부조작과 관련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고 이익을 받은 자
- 포상금 최고 1,500만원 이하
 - 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설계·제작·유통자
 - ② 운동경기 관련 정보제공자
 - ③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구매 중개·알선자
 - ④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자
 - ⑤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⑥ 투표권 구매, 알선, 양도받을 수 없는 자를 신고한 경우



※ 불법 스포츠도토 신고센터 1899-1119 ⇨ 자세한 안내는 172p 참조
 ※ 도박 문제 전문 상담 1336 ⇨ 자세한 안내는 172p 참조

chapter 03 도박(불법 스포츠)

국민체육진흥법

프로·아마추어 전 운동종목 승부조작 적발 시 형사처벌(2014. 7. 29. 시행)
 도박이용자·홍보·경기정보제공자 등 처벌 규정 신설(2012. 2. 17. 시행)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는 행위(사이트 운영자)

금지조항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등)
 벌칙조항 제47조 제2호(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

해석 유사행위란?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제26조 1항)로, 즉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시스템 설계·제작·유통자 등)

금지조항 제26조 제2항 제1호
 벌칙조항 제48조 제4호(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운동경기 정보 제공자)

금지조항 제26조 제2항 제3호
 벌칙조항 제49조 제1호(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유사 포함)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사이트 홍보자 또는 구매 중개·알선자)

금지조항 제26조 제2항 제2호
 벌칙조항 제49조 제1호(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 행위(도박 행위자)

벌칙조항 제48조 제3호(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해석 제26조 제2항 제2호(유사행위를 위하여란?)

본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팅 가능 운동경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 상 '유사행위를 위하여'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위하여'로 좁게 해석함이 타당함(운영자가 아닌 이용자, 홍보자 등에게 정보 제공 시 처벌할 수 없다).

해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란?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한다(시행령 제29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 도박(불법인터넷 도박 및 일반 도박 등)

* 관련 신고센터 172p 참고

- ① 1회 위반 시 :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 ② 2회 위반 시 : 출장정지 7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 ③ 3회 이상 위반 시 : 실격처분
- ④ 기타 : 직무정지

◆ 2021 KBO 규약의 148조 [부정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제 1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6.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 나.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 및 사이트 설계, 제작, 유통행위
 - 다. 불법스포츠 도박 홍보 및 구매증개 알선 행위
 - 라.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위하여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마. 스포츠도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의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
 - 바. 마목과 관련하여 승부조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사.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2.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제 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의 제재를 가한다.

chapter
04

불법 스포츠로 Q&A



Q 불법사이트 신고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신고 처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고된 사이트는 내부 절차를 거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사이트로 확인된 건(약 15일 소요)에 한하여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 1만원권)이 지급됩니다.

Q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신고내용이 주된 단서가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서 위반 사실을 수사하고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포상금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 A** 포상금의 세액 공제율은 22%(소득세 20%, 기타 소득세 2%)입니다.

Q 신고자 정보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 A**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 등 개인 신변에 관한 사항은 불법행위 조사 시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단 및 주최단체 등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 자가진단

지난 1년 동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해당하는 점수에 O표 하세요.	없음 (0점)	가끔 (1점)	때때로 (2점)	항상 (3점)
도박에서 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박에서 이전과 같은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걸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날 도박을 다시 한 적이 있습니까?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무엇을 판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도박행위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도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포함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박행위를 비난받거나 도박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도박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도박하는 방식이나 도박을 해서 발생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가진단표 채점 및 평가

나의 점수 _____ 점

[0점] 문제 없음	도박을 사용하는 시간과 돈을 통제하며, 도박의 목적이 돈을 따거나 승리하는 데 있지 않고, 오락하는 데 있음
[1-2점] 저위험성 도박	도박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수준으로 도박을 하지만 도박을 자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3-7점] 중위험성 도박	도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8점 이상] 문제성 도박	도박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도박 문제 전문 상담 **1336**
(365일 24시간 운영)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자신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선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한다. 땀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이기에 승자에게는 뜨거운 찬사를, 패자에게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 스포츠에 승부조작이 개입되면, 그것은 이미 스포츠일 수가 없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승부조작이라는 각본으로 얼룩져 버린 것이다. 승부조작의 뒤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이 둘은 서로 기대어 스포츠 세계를 쪼먹는 불가사리다.

특별취재 [Incident]

승부조작



2015년 5월, A 선수는 ○○에서 열린 경기에서 1회에 실점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그 전 해에도 3경기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한 차례 성공하였다. A 선수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야구 브로커 B씨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선수들에게 접근해 승부조작을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 자신도 가담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KBO에서는 A 선수에게 영구 실격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A 선수는 KBO 리그에서 선수나 지도자 또는 구단 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됐다.

특별취재 [Incident]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A 선수, B 선수가 승부조작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있었다. 브로커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선수를 연결하여 승부조작을 시도했다. 따라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한 승부조작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불법 스포츠 도박은 아마추어 스포츠에도 깊이 뿌리박혀 있다.

어린 선수들은 호기심 때문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 쉽게 노출된다. 한 프로야구 선수는 대학 시절에 동료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참가 권유를 거절하여 소외당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아마추어 시절에는 동료들이 중요하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이 잘못이라는 인식도 부족하고, '한 번 정도는' 하는 안일한 생각도 만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불법스포츠 도박은 단 한 번이라도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언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취재 [Incident]

도박



프로야구 선수들이 도박에 연루된 사건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다. 도박 때문에 처벌되어 리그에서 퇴출당한 선수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선수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도박장을 드나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문제다.

A 구단의 B 선수는 2011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 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 KBO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B 선수에게 20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내렸고, 소속구단은 선수를 방출하기로 했다.

C 선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C 선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KBO는 30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다. 소속구단은 자체적으로 2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가, 결국 방출하고 말았다.

한편 D 구단 소속의 일부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도중 카지노를 출입해 물의를 빚었다. 휴식을 위해 쇼핑물에 찾았던 선수 가운데 4명이 카지노에 들러 일부 선수가 도박을 한 것이었다. KBO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참여한 3명의 선수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단에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05

금지약물 및 도핑검사

-
1. 도핑방지 가이드
 2. 11가지 도핑방지규정위반
 3. 금지약물과 도핑검사
 4. 선수의 권리와 의무
 5. 특별취재 [Incident]
- 아마 선수에게까지 뻗친 도핑



chapter

01

도핑방지 가이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006년 11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입니다. KADA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도핑방지교육·홍보, 도핑관리, 조사, 과학연구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도핑방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금지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깨끗한 스포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수의 권리와 의무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은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준수함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선수는 책임감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스포츠의 공정성 및 평등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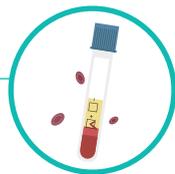
선수는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스포츠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2

11가지 도핑방지규정위반 (Anti-Doping Rule Violation)

01

선수의 소변시료 또는 혈액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는 경우



02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03

선수의 시료제공 회피, 거부 또는 실패



04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 국제경기연맹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RTP) 등재선수에 한함



05

도핑관리과정 중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시도



06

금지약물(방법 포함)을 소지한 경우



07

금지약물(방법 포함)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거래를 시도한 경우



08

선수에게 경기기간에 금지약물(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한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금지약물(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한 경우



09

공모(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음모, 은폐 등 기타 관계자에 의한 도핑방지규정위반 시도)



10

금지된 연루(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중이거나 자격 정지된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와 연루된 경우)



1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제보 제지 또는 보복



chapter
03

금지약물과 도핑검사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는 선수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물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약물의 기준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금지목록 국제표준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선정·목록화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지목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 KADA 누리집에서 「금지목록 국제표준」 국문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감기, 고혈압, 당뇨, ADHD 등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도 금지약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충제 및 건강보조제 또한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하세요!

약물 사용 전, KADA 누리집에서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금지 여부를 반드시 검색하세요.



금지약물

Q&A



Q 선수는 어떠한 약물도 사용하지 못하나요?

A 치료 또는 부상회복을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복용) 가능합니다.

* Therapeutic Use Exemption

Q TUE를 신청하면 모든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TUE를 신청하면, 의사로 이루어진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서 아래 명시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 ▶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 ▶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이 선수의 건강회복 이외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 ▶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외에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Q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1단계** KADA에서 해당 금지약물의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승인 유무 확인

2단계 해당 금지약물에 대한 TUE 승인내역이 없을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3단계 청문회 개최 후 제재 부과

* 규정위반 혐의를 통지받은 선수는 청문의 권리를 가집니다.

* 제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제재 사실도 공개되나요?

A KADA는 누리집을 통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선수 명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단, 제재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도핑방지규정을 지키는 TUE 신청절차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방법

1. 사용(복용)할 의약품의 금지약물여부 확인

-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 경기 참가 30일 이전 TUE 신청
- 상시 금지약물
 - 사용 또는 복용이 필요하다고 의료적인 판단이 내려진 즉시 신청
 -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사용
 - * 불승인 시 사용 불가

2. 서류준비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KADA 누리집 다운로드)
- 진단서 혹은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검사기록 등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의 료자료

3. 서류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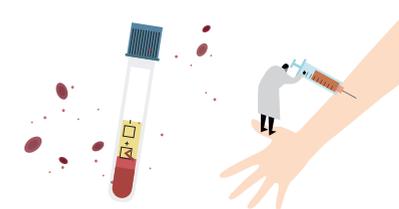
- 온라인: KADA 누리집(www.kada.or.kr)
- 이메일: tue@kada.or.kr
- 팩스: 02-2045-9899

Q. 긴급 상황에는 어떡하나요?

- 응급 병원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후 TUE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실 방문 자체가 응급상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후 TUE 신청 또한 승인 또는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도핑검사

Q&A



Q 저도 도핑검사 대상자 인가요?

A 모든 선수는 도핑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핑검사 대상자는 KADA, 국제경기연맹 등 도핑방지기구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립된 검사배분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정 방식은 순위별, 무작위, 표적검사,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Q 미성년 선수도 도핑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미성년 선수도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있다면 도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검사를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도핑검사 일정은 검사주관기구(KADA 또는 국제경기연맹 등)가 정하며,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진행됩니다. 단, 선수의 경기력 수준과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주관기구·검사 빈도·시료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재지정보가 뭐죠?

A KADA는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선수의 훈련·경기일정,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관리합니다.

Q 저는 소재지정보 제출 대상자인가요?

A 도핑검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RTP(검사대상명 부) 선수와 TP(검사대상후보명부) 선수는 소재지정 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 프로스포츠의 경우 프로구단/프로선수 검사명부 별도 운영
- * 해당 선수들은 소재지정보 제출 방법 추가 안내

주의하세요!

- RTP 선수는 12개월 내 검사불이행 및 제출불 이행 합산 3회 발생 시,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 조치
- TP 선수의 경우 소재지 정보 제출 의무 미준수 시, 서면경고/교육/표적 검사/RTP등재 결과조치

도핑검사 절차

도핑검사는 시료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경기장, 거주지, 훈련장 등 선수가 있는 곳 어디든 도핑검사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료의 종류: 소변, 혈액

* 종목과 선수 개인에 따라 필요한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선수는 검사주관기구가 요청하는 시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도핑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01

검사대상자 통지 및 동반

- a. 도핑검사관(DCO: Doping Control Officer) 또는 샤프롱(Chaperone)으로부터 검사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을 통지받습니다.
- b. 선수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도핑관리실로 이동합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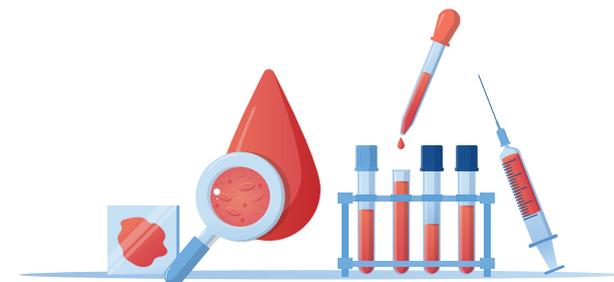
시료제공

소변

- a. 도핑검사관의 안내에 따라 한 개의 시료채취 용기(Vessel)를 선택합니다.
- b.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여 관찰 하에 90ml 이상의 소변을 용기 안에 제공합니다.

혈액

- a. 선수는 도핑관리실 도착 후 시료 채취 제공 전까지 발을 바닥에 대고 앉은 채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 b. 도핑검사관의 안내에 따라 한 개의 혈액시료키트를 선택합니다.
- c. 선수가 키트를 직접 개봉하고, BCO(Blood Collection Officer)가 혈액을 채취합니다.



03

시료봉인



소변

- a. 시료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봉 흔적이 없는지, 오염이나 파손은 없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 b. 확인 후 자신의 소변시료를 키트에 나누어 담고 직접 봉인합니다.

혈액

- a. 선수는 혈액시료가 담긴 튜브를 보관용기에 넣고 직접 봉인합니다.
- * 부득이한 경우 선수 요청에 따라 도핑검사관 또는 선수대리인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4

서류작성

- a. 검사서 내용에 오류 또는 빈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최종 서명을 합니다.
- b. 도핑검사관으로부터 검사서 선수 사본을 수령하고 도핑관리실을 나갑니다.



chapter
04

선수의 권리와 의무

선수의 권리

1. 시료채취요원(도핑검사관, 혈액채취요원, 샤프롱)의 신분을 확인할 권리
2. 필요 시, 1명의 선수대리인과 1명의 통역을 동반할 권리
3. 도핑검사관이 승인하는 합당한 사유로 도핑관리실 도착지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경기기간 중 뿐만 아니라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도 해당
4. 장애인 또는 미성년 선수의 경우,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시료채취용품의 선택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시료채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권리

선수의 의무

1. 검사대상자 통지시점부터 시료채취 후 도핑관리실을 떠날때까지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의 직접적인 관찰을 받아야 함
2. 시료가 제공되는 동안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에 의해 관찰되며, 통지 후 첫 번째 소변 시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4. 도핑관리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
5. 시료채취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거부 또는 비준수 시,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합당한 사유로 도핑검사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도핑관리실에 도착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QR코드)에서 확인해주세요.

특별취재 [Incident]

아마 선수에게까지 벌친 도핑



사례 1 병원 처방약 복용에 따른 금지약물 검출

D 선수는 시합을 앞두고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 운동선수임을 밝히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경기 종료 후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 S6 흥분제에 해당하는 금지약물 메틸에페드린(Methylephedrine)이 검출되었다. 사건 이후 D 선수는 의사에게 운동선수임을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도핑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물론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처방약 내에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최종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금지약물이 체내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사례 2 시료채취 거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F 선수를 찾아가 도핑검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F 선수는 자신이 국가대표도 아닌데 도핑검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표시하였으며, 검사를 거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경기단체 등록 선수 및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도핑검사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대상 선수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시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F 선수에게 위원회는 결국 최종 자격정지 4년을 부과했다.

* 위 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 되었습니다.

06

음주운전

1. 음주운전
2. 음주운전 예방
3. 특별취재 [Incident]
- 음주운전



chapter
01

음주운전

음주운전도 중독이다

더 빨리, 더 쉽게 양심의 가책 없이!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638만 7천 중 음주 운전자 18만 1천 361명을 분석했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발된 적 없다.



적발되기 전 평균 4~5회의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시행

처벌수위	혈중알코올농도
2년~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1년~2년 징역, 500~1,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0.08~0.2%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0.03~0.08%



**프로스포츠 선수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 선수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민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보험료 할증 1회 적발 10%	벌점 100점
형사적 책임	KBO+구단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출장정지, 제재금, 봉사 활동(최대 영구제명)

chapter
02

음주운전 예방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술을 마시기 전, 차를 가져가지 않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운전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픽업을 부탁합니다.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할 때

- 설득하여 말린다.
- 가족에게 전화한다.
-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KBO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 음주운전

- ① 단순 적발 :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 ②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시) : 출장정지 7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 ③ 음주 접촉 사고 : 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 ④ 음주 인사 사고 : 출장정지 120경기,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
- ⑤ ①~④항 중복시 병과
- ⑥ 2회 발생시 : ①~④ 적용 항의 제재수준보다 가중처벌
- ⑦ 3회 이상 발생시 :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 ⑧ 기타 : 직무정지



2001년 입단한 이래, A 선수는 19년 동안 B 구단에서만 뛰었다. 2001년부터 무려 16시즌 동안 연속해서 세 자릿수 안타를 쳤고, 2174개 안타를 쳐 이 부문에서 KBO 역대 3위에 올라 있기도 했다. 우승컵도 7번이나 들어 올린 영광을 누렸다. 그런 그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은퇴하기로 한 것이다.

그 전날 A 선수는 자녀의 아이스하키 훈련을 지켜본 다음,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그날 오전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 경찰이 A 선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니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 선수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A 선수는 곧장 구단에 보고했고, 구단도 KBO에 사실을 신고했다. 오후에 가족과 함께 구단을 찾은 A 선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은퇴를 결정하였다.

CLEAN BASEBALL 함께하는 야구, 공정한 야구



PART 3

코로나19 방역

7. 코로나19 방역지침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No. 1 클린스포츠

07

코로나19 방역지침

-
1. 정부 방역수칙 및 안내
 2. KBO 방역 가이드
 3. 특별취재 [Incident]
- 경기중 마스크 착용
 4. 야구선수들에게 묻는다! 클린베이스볼 Q&A



chapter 01

정부 방역수칙 및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18시 이전 예방접종자 2명, 18시 이후 예방접종자 4명 포함시)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2021년 9월 기준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적모임금지 원칙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83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chapter 02

KBO 방역 가이드

KBO 리그 코로나19 기본 예방 수칙

1	방문 자제	코로나19 유행 지역 출입 금지, 다중 밀집 장소 및 각종 모임 등 방문 자제
2	가족 관리	가족 및 동거인의 감염증 유행 지역, 밀집 장소 방문 자제 관리 (내국인/외국인 동일 적용) → 리그 관계자 가족 및 동거인이 해외에서 입국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경우 반드시 리그 관계자와 분리된 거처를 마련하여 격리 실시
3	방역 수칙 준수	정부 및 방역당국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철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 등)
4	일일 점검	일일 자가점검 지속 실시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구단을 통한 KBO 보고
5	의료기관 방문	개인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방문 시 위치, 일정 등 사전에 구단 보고
6	공동 이용공간 출입	경기장(구장), 훈련장, 숙소 등 공동 이용 공간 출입 시 체온 검사 및 손 소독제 지속 사용 실시

7	타인 접촉 자제	소재 불명 타인과 접촉 자제 → 팬 과의 접촉 차단을 위해 악수, 사인, 사인 요청, 선물 수령 정중히 거절
8	식사 위생	구장 내 단체 식사 시 대면 최소화 식사 방식 권장 및 선수단/관계자 간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준수 철저
9	위생 관리	피트니스장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지속 사용, 공용 물품 사용 자제 (수건, 샤워용품 등)
10	동선 분리	선수단과 프런트, 리그 관계자, 팬과의 공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여 최대한 접촉 자제 → 선수단 동선 내 팬 방문 및 진입 차단 (사전 허가 및 관계 인원만 출입 가능) ※ 퓨처스리그 포함
11	마스크 착용	선수단/프런트 등 모든 구단 관계자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 원칙 (사무실 및 그라운드 등) → 경기/훈련 시 예외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따라 모든 공간 내 마스크 착용 필수 원칙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인정
12	구장 방문	구장 방문자(관중 포함)는 입장 시 발열 검사 및 손 소독제 사용, '콜 체크인' 의무화(출입명부관리 철저) → 관계자 입장 시 콜 체크인 또는 전자출입명부(QR 코드) 의무화 ※ 수기출입명부 비치(4주간 보관 후 폐기) → 선수단 입장 시 수기출입명부(발열체크) 시행(4주간 보관 후 폐기)

2021 KBO 리그 코로나19 선수단 예방/방역 수칙 미준수 처벌 규정

2021 KBO 리그 코로나19 선수단 예방/방역 수칙 미준수 처벌 규정



경기장 내 마스크 미착용

경기 중 덕아웃, 거리두기 최고 단계 훈련, 경기장 내 이동 등 마스크 미착용이 노출된 경우

* 불시점검: 중계, 언론, SNS 등

▶ 제재금 50만원 (2회 이상 적발 시 2배씩 증가)



일별 자가점검 미제출

유증상, 밀접접촉, 확진, 확진시설 방문 등 상황 발생 시 자가점검 미제출이 확인된 경우

▶ 제재금 20만원 (2회 이상 적발 시 2배씩 증가)



구단 방역관리 소홀

KBO 리그 코로나19 매뉴얼 내 방역수칙 및 정부 방역지침 위반 관련 구단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

▶ 상벌위원회 개최



선수단 공간 및 동선 외부인 출입

구단 업무 또는 공적인 업무와 무관한 가족, 친구, 지인 등 출입시킨 경우

▶ 제재금 100만원 (2회 이상 적발 시 2배씩 증가)



정부의 방역 수칙 위반

사적모임 제한, 위험시설 방문, 경기장 외 마스크 미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적발된 경우

▶ 상벌위원회 개최

* 2021년 9월 기준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 [Incident]

경기중 마스크 착용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위반한 A 선수를 비롯한 이 팀 소속 선수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KBO는 “해당 선수들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겼다.”며 “이에 선수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 사례 처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및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KBO 리그는 경기 중 그라운드를 제외한 덕아웃, 락커룸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선수단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자체별 지침 여부와 관계없이 KBO 리그 모든 구장에 적용된다.

2021년 10월 현재 경기장 내 마스크 미착용사례가 적발될 경우 벌금 50만원(추가적발 시 2배씩 증가)이 부과된다.



야구선수들에게 묻는다! 클린베이스볼 Q&A

01 다음 중 스포츠 폭력이 아닌 것은?

- ①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 ②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 ③ 팀워크를 위해 단체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
- ④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02 스포츠 폭력의 유형에서 방관자 입장의 폭력에 속하는 것은?

- ① 고함과 욕설, 외모 비하, 헐뜯
- ② 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하기
- ③ 무시하기, 따돌리기, 비웃기
- ④ 음주 혹은 흡연 강요하기, 자유시간 통제하기

03 다음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 ① 스포츠 성폭력
- ② 승부조작
- ③ 불법 스포츠 도박
- ④ 스포츠 폭력

04 정신적 성폭력에 속하는 것은?

- ① 강간
- ② 성희롱
- ③ 성추행
- ④ 따돌림

05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힘의 차이
- ② 왜곡된 성 의식
- ③ 성차별적 문화
- ④ 인권 존중

06 스포츠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 ① 성폭행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현장을 지킨다.
- ② 성폭행이 일어나면 위생을 위해 즉시 몸을 씻는다.
- ③ 사건에 대해 동료, 지도자, 부모님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 ④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도움이 필요 없다.

07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이용하는 행위
- ② 불법 스포츠 도박을 고발하는 행위
- ③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는 행위
- ④ 불법 스포츠 도박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08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조사 및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스포츠 분야 도핑 관리 전담기구?

- ①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② 세계도핑방지기구
- ③ 한국도핑방지협회
- ④ 한국도핑방지규정

09 다음 중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아닌 것은?

- ① 소변 및 혈액에 금지약물이 확인되는 경우
- ② 소변이나 혈액 제공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 ③ 경기기간 외에 금지약물을 투여한 경우
- ④ 소재지 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도핑검사의 대상은?

- ① 프로선수만
- ② 아마추어선수만
- ③ 선수라면 누구나
- ④ 도핑 의혹이 있는 선수만

CLEAN BASEBALL

함께하는 야구,
공정한 야구



— PART 4

선수들을 위한 기타 정보

- 8. 아마 야구 선수
- 9. 프로 야구 선수
- 10. 클린베이스볼 신고센터 및 주요 연락처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No. 1 클린스포츠

08

아마 야구 선수

-
1. 스포츠 온라인 교육 안내
 2. 대회 관련 징계세칙
 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4.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5.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제도



chapter
01

스포츠 온라인 교육 안내

스포츠 온라인 교육

지도자 및 선수 등록시 스포츠인권/도핑 교육



적어주세요!

아이디

패스워드

제2장 전문선수 등록

제14조 [등록 자격 및 범위]

- ① 전문선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자·심판 등록

제31조 [지도자 등록 절차]

- ② 지도자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https://g1.sports.or.kr/main.do>에서 지도자 및 선수 등록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chapter 02 대회 관련 징계세칙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스포츠공정위원회 제33조 제3항 관련)

목적

대회 중 경기장 질서확립으로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여 선진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

주요내용

대상별 징계기준

심판 및 임원 (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 이상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 병과)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1년 이상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다. 부정선수를 출전 지시 : 자격정지 3년 이상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 병과)
-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 이상

기타 임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사건발생 즉시 적용하고 해당 단체는 48시간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chapter
0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5장 조사 및 징계

제24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의무)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는 본 협회 정관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4조에 따른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사도위원회 또는 연맹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6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조사 및 징계대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협회 지침 위반
 9.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정관 제20조(선거의 중립성) 제4항에 따라 협회(시도회원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 ③ 협회,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직원이 징계혐의자가 있을 때에는 협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 ④ 제30조 제2항과 제36조 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조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의 2(징계시효)

-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4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기관에 있다.

제28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 ① 위원회는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며,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의 경우 체육회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 ③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연맹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 ④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사군·구체육회의 경우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제29조(징계종류)

-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 2. 경징계 : 견책
-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 2. 경징계 : 견책, 감봉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 2. 경징계 : 견책, 감봉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30조(징계요구)

- ① 협회는 징계혐의자와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7조 제2항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시도위원회 및 연맹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 를 협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출석요구)

-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 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 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 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요구서 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 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포기서를 제출 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 요구서 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 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 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 술할 수 있다.

제32조(심문과 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의 정도 결정)

-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 ② 위원회(시도위원회, 연맹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7조(조사 및 징계대상)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 ③ 위원회(시도위원회, 연맹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7조 제1항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4조(징계의 감경)

- ① 제33조 및 제36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한 것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 3. 폭력·성폭력
 - 4. 승부조작, 편파판정
-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심의신청 등)

- ① 징계혐의자는 시도위원회 또는 연맹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시도체육회와 위원회에 각각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 ④ 시도위원회 또는 연맹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시도위원회 또는 연맹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 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시도 협회, 전국규모 연맹 또는 협회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시도위원회, 연맹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시도위원회, 연맹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시도위원회, 연맹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위원회, 연맹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시도위원회, 연맹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징계혐의자가 제3항에 따른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6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임시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 ⑨ 임시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6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8조(징계의 효력 등)

- ① 시도위원회, 연맹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재심신청에 대한 체육회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9조(징계부가금)

- ① 위원회(사도위원회, 연맹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5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협이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협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협이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협 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⑥ 징계협이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 보고) 제24조에 따른 시도위원회 또는 연맹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권의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기관인 시도위원회 또는 연맹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6개월 내에 처리하게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의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 ③ 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1.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협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 2. 시도위원회 또는 연맹위원회는 해당 시도 회원단체 또는 전국규모연맹체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 ④ 협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의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도 회원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는 협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기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의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구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⑦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바, 바, 사, 아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협이자 및 그 소속단체장, 체육회, 징계협이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교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의 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협이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chapter
04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 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 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다.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홍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2회 이상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라.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이나 동영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포함)
마.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바.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 ¹⁾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운동부 ²⁾	• 대회 출전정지 (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 ³⁾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극히 경미한 경우 ⁴⁾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사. 성추행 등 행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아. 성희롱 등 행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⁴⁾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지도자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당한 휴식권수업권 등)	선수	•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심판	•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 자격정지 2년 이하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 지도자 심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⁵⁾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⁷⁾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타. 불법도박 ⁸⁾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⁶⁾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⁷⁾ :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하. 협회 지침 위반	팀	① 인건비 및 물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차기 사업 불인정 ③ 협회 주최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지도자	① 6개월 이상의 대회 출전 정지 ②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제외
	선수	① 6개월 이상의 대회 출전 정지 ② 국가대표 선발 제외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 학부모 소속 학교 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 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주3) 피해자가 제2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 "파"를 적용한다.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동영상 촬영 행위 포함)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주6)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을 말한다.

주7)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인적·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

주8)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

chapter
05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제도

주요 내용



신청기간

지명일 30일 전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학교폭력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타 KBO요구자료



신청방법

KBO 신인지명 대상 선수 등록 시스템 사이트 (<http://draft.koreabaseball.com/>) 온라인 신청



허위사실제출 및 징계이력 선수에 대한 자격 제한

- 제출서류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계약진행여부에 따라 지명 무효화 또는 KBO 제재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종료까지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입단 제한



참가신청서 미제출시 다음연도로부터 2년간 신인 드래프트 참가 제한



KBO 규약 제108조 [신인 드래프트]

- ① KBO는 매년 특정일자를 정하여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한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 ②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인선수는 KBO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지명일 30일 전까지 당해 연도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인선수는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소속 학교 재학중 받았던 징계, 부상 이력 기입) 제출 시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와 **생활기록부** 등 KBO가 요구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KBO는 제2항에 따라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한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대한체육회, 기타 야구관련 경기주관 단체에서 자격정지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수의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KBO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인선수에게 **선수 계약 여부**에 따라 **지명 무효화 또는 참가 활동 정지, 실격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⑥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가 구단 의무검진 등을 통해 심각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선수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구단은 지명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소속 선수 공시전까지 KBO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득 할시 지명 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 ⑦ 제5항 또는 6항에 따라 지명 또는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구단은 다음연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동일 라운드 종료 후 추가 보상 지명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고교 및 대학 졸업 예정 선수 중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인 선수**는 **다음 연도로부터 2년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 ⑨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명 구단과의 계약을 거부한 선수**는 **다음 연도로 부터 2년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고교졸업예정 선수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⑩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외국 프로 구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입단하지 못한 선수는 다음 연도로 부터 2년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지명에 참가하였으나 미지명된 이후 소속 구단을 찾기 위해 외국 구단과 협상을 진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⑪ 신인 드래프트는 제109조 및 제110조 의 방식으로 실시 한다. 다만, KBO는 필요 시 별도의 방식에 의한 신인 드래프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인 드래프트의 방식이나 지명할 수 있는 선수의 수 등은 KBO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⑫ 총재는 지명된 신인선수의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공시한다.

09

프로 야구 선수

1. 유해행위 및 이해관계의 금지
2. 상벌위원회 규정
3. 구장 질서에 대한 규정
4.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
5. 벌칙내규
6. 스피드업
7. KBO 표창규정
8. 프로야구선수협회 안내
9. 프로선수들에게 묻는다! 클린베이스볼 Q&A



chapter
01

유해행위 및 이해관계의 금지

* 2021 KBO 규약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48조 [부정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 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제1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기(제13장 소정의 경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있어 고의적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대만히 하는 행위
2.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3.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에 내기나 도박을 하는 행위
4.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5.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6.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 나. 불법 스포츠 도박 시스템 및 사이트 설계·제작·유통행위
 - 다. 불법 스포츠 도박 홍보 및 구매증개 알선행위
 - 라. 불법 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위하여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마. 스포츠토트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
 - 바. 마목과 관련하여 승부조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사.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7. 제48조에 따른 사해행위

8. 기타 위 각 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제149조 [보고의무]

- ①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구단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구단 및 보고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총재는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당해 부정행위가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고
 2.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제명. 다만,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실적처분의 제재를 가한다.
- ③ 구단 임직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직무정지
 2. 금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한 제재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⑤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⑥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⑦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퍼센트를 제6항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이 마약범죄, 병역비리, 인종차별, 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각 제재 내용은 병과할 수 있음

◆ 도박(불법인터넷 도박 및 일반 도박 등)

- ① 1회 위반시 :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 ② 2회 위반시 : 출장정지 7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 ③ 3회 이상 위반시 : 실격처분
- ④ 기타 : 직무정지

◆ 폭력행위(가정폭력, 경기 외적 폭력 등) 및 성범죄

- ① 가정폭력, 경기 외적 폭력
 - 출장정지 3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 ② 성범죄
 - 감독, 코칭스태프 : 영구제명, 1년 이상 실격처분, 출장정지 100경기 이상, 1,000만원 이상 제재금
 - 선수 : 영구제명, 1년 이상 실격처분, 출장정지 72경기 이상, 1,000만원 이상 제재금
- ③ 재발생시 위 ①, ②의 제재수준보다 가중처벌

◆ 마약범죄(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실격처분, 직무정지

◆ 병역 비리

영구실격, 직무정지(단, 구단 직원이 연루되었을 경우 : 직무정지 1년 이상, 구단이 연루되었을 경우 : 제재금 1억 이상)

◆ 음주운전

- ① 단순 적발 :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 ②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시) : 출장정지 7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 ③ 음주 접촉 사고 : 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 ④ 음주 인사 사고 : 출장정지 120경기,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

- ⑤ ①~④항 중복시 병과
- ⑥ 2회 발생시 : ①~④ 적용 항의 제재수준보다 가중처벌
- ⑦ 3회 이상 발생시 :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 ⑧ 기타 : 직무정지

◆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 도핑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

- ① 1회 적발시 : 1년 자격정지
- ② 2회 적발시 : 영구제명
- ③ 국가대표 선발 대상 제외 및 자격 박탈
- ④ KBO 리그 시상 및 후보 자격 박탈 : KBO MVP, 신인상, 골든글러브, 올스타전 등
- ⑤ 해당 시즌 개인 기록 무효화(팀 기록은 유지)

◆ 교육 및 행사 불참시

- ① 부정행위 방지, 스포츠윤리교육, 도핑 등 KBO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불참시 제재금 10만원 부과
- ② 단, 총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 ① 1회 발생시 :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 ② 2회 발생시 : 출장정지 2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
- ③ 3회 이상 발생시 :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 종교적 차별행위, 인종 차별적 언행 등

- ① 1회 발생시 : 엄중경고 및 제재금 200만원
- ② 2회 발생시 : 출장정지 5경기 이상, 제재금 300만원
- ③ 3회 이상 발생시 :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이상

◆ 심판 또는 리그 비방

- ① 1회 발생시 :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 ② 2회 발생시 : 출장정지 2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
- ③ 3회 이상 발생시 :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① 1회 발생시 : 엄중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
- ② 2회 발생시 : 제재금 500만원 이상

◆ 기타

- ①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범죄 등의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필요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KBO가 지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참가활동정지시 보수 지급도 정지되며, 이후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재에 관한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총재는 경중과 심각성에 따라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 특히 품위 손상행위에 대한 총재의 제재가 있는 후에 그 행위를 이유로 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는 경우 총재는 그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 ④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범죄 등의 위반행위(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
- ⑤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15.1.13 → 2017.1.17 → 2018.9.11 → 2019.8.27 개정]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 ①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한 경우 총재는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15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③ 총재는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소속구단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상벌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 ⑤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1992.2.27 → 2003.6.5 → 2004.9.21 → 2009.3.4 → 2012.3.13 → 2014.4.10 → 2017.1.17 개정]

 KBO규약 제 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3조 [겸직금지]

KBO의 정관 또는 KBO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느 구단에 소속된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는 누구든지 다른 구단의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를 겸직할 수 없다.

제154조 [다른 구단 주식의 소유 금지]

- ① 구단 및 당해 구단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는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② KBO 사무처 임직원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어떠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 ①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소속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허용된다.

제156조 [전직제한]

- ① 소속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속구단과 사이에 제155조 소정의 금전거래 등을 한 구단 임직원,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선수계약의 양도 등의 사유로 소속구단이 변경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거래 등을 청산하여야 한다.
- ②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1항에 따라 소유하던 전 소속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거래를 청산할 때까지 KBO 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

제157조 [위반에 따른 제재]

- ① 총재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리그 관계자에게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리그 관계자 중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총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리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참가 활동도 할 수 없다.

chapter 02

상벌위원회 규정

* 2021 KBO 규약

제1조 [근거]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프로야구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KBO 정관, KBO 규약, KBO 리그 규정, 야구규칙 등 제규정을 위배하여 KBO 및 KBO 리그(KBO 퓨처스리그 포함)의 품위를 손상케한 구단 및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상벌을 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구성] 상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재가 위촉하는 야구 관계인사로 구성한다.

제4조 [소집] 총재가 필요시 소집한다.

제5조 [의결]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

- ① 상벌위원회는 제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발생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참석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재는 KBO 규약 및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에 의거, 징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임기] 상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도 가능하다.

제8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제소, 물수경기에 대한 판정
- ②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표창과 제재
- ③ 기타 총재가 위임하는 사항

제9조 [보수] 본 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0조 [부칙]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2.19 → 2017.1.1 개정 → 2021.2.19 개정]

chapter 03

구장 질서에 대한 처벌

* 2021 KBO 리그 규정

리그 규정 제24조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1. 규약, 리그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은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은 총재에 의해 엄중한 제재(제재금, 출장정지 또는 병과)가 가해진다. 제재가 가해질 때에는 벌칙내규에 따른다.
2. 전 항에 의해 제재금이 가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 날부터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단을 통하여 KBO 사무국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불 완료일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지불 완료 다음 날부터 출장 가능).
3.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자는 제재 종료일까지 KBO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엔트리 말소는 가능).
4. 출장정지 제재 관련 경기수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출장정지 제재 경기수는 KBO 정규시즌 및 포스트시즌 경기를 포함 연속적으로 적용한다.
 - 나. KBO 정규시즌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제재 통보일부터 소속팀 정규시즌 경기수 거행 기준
 - 다. KBO 퓨처스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제재 통보일부터 해당 팀 퓨처스리그 경기수 거행 기준
 - 라. KBO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결정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엔트리에서 말소할 수 없다.
 - 마. 빈볼, 폭행, 도핑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소속팀에게도 제재금을 부과한다.

chapter
04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

* 2021 KBO 리그 규정

1.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비신사적인 플레이, 고의적 빈볼투구 및 슬라이딩시 발을 높이 드는 행위 등 금지
2. 욕설, 침 뱉는 행위 금지
3. 경기 중 씹는 담배의 휴대 및 사용 금지
4. 경기 중 관객, 심판, 상대 구단 선수단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 금지
5. 경기 중 심판, 상대 구단 선수단에게 친목적 태도 금지
6. 덕아웃, 경기장 내에서 유니폼 및 덕아웃자켓 이외 복장 금지(반바지, 슬리퍼 등 착용 자제)
7. 유니폼 착용 후 관객이 볼 수 있는 곳에서의 흡연 금지
8. 끝내기 홈런, 안타 등을 기록한 선수에게 과도한 환대행위 금지(물통, 물병, 쓰레기통 등을 사용하는 행위, 헬멧으로 때리는 행위 등)
9. 헬멧, 모자 등 야구용품에 지나친 개인 편향의 표현 및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표식 금지
10. 경기개시 직전에 애국가가 방송될 때 벤치 내에 있는 선수는 벤치 앞에 나와 정렬하며, 기타 경기장 내에 있는 심판위원과 선수는 모자를 벗고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얹는다. 연주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 돌출행동 금지
11. 과도한 문신의 외부노출 금지

chapter
05

벌칙내규

* 2021 KBO 리그 규정

※ 총재는 본 KBO의 벌칙내규에 따라 구단, 감독, 코치, 심판위원, 기타 관련 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1. 구단 : 경고, 제재금, 기타 경기규칙에 준하여 제재
2. 개인 :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제재금, 출장정지 또는 제재금과 출장정지를 병과하여 제재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경고를 포함하여 1회 이상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 코치, 선수

1.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퇴장 당했을 때 제재: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경기 이하 단, 퇴장시 별다른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날 경우 다른 제재는 과하지 않는다.
2.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상대편 선수 또는 심판위원을 구타하여 퇴장 당했을 때 제재: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3.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퇴장 당했을 때 제재: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4.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빈볼과 폭행 등의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퇴장 당했을 때 제재: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5. 감독 또는 코치가 선수의 빈볼투구와 관련 지시 및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간주되었을 때 제재: 경고,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6.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관객과 싸우거나 스탠드에 뛰어들어가서 소란을 피워 퇴장당했을 때 제재: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7.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관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재: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8.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중 관객들의 질서문란행위를 선동 또는 야기하였을 때 제재: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9.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을 통하여 (i) KBO, 구단 또는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 (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를 말하며, 이하 “리그”라 한다) 나 리그 관계자를 모욕 내지 비방할 때, (ii) 성별, 외모, 장애, 혼인,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언행을 할 때, 또는 (iii)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제재: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 감독, 코치가 심판관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경기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을 때 제재: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20경기 이하

 기타

1.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관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70만원 이하
2.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종료 후나 경기 중에 기록실과 심판실을 찾아와서 관정에 항의하거나 경기장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3.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종료 후나 경기 중에 기록실과 심판실로 찾아와서 폭행을 하였을 때 제재: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정지 10경기 이하
4. 구단 관계자가 경기 중 관객을 선동하였을 때 제재: 경고, 제재금 200만원 이하
5.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전후에 심판실로 찾아와서 사적인 환담을 나누거나 친목적인 언행을 하였을 때 제재: 경고, 제재금 100만원 이하

[2003.3.10 → 2003.12.9 → 2008.2.19 개정]

chapter
06

스피드업

* 2021 KBO 리그 규정

 경기의 스피드업

경기의 스피드업을 통하여 경기시간을 단축하고, 관객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하기 위하여 구단, 감독, 코치, 선수, 심판 및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참여한다. 총재는 본 스피드업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경고, 제재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021.3.16 개정)

1. 구단

- ① 심판위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② 경기 중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수석코치를 포함한 모든 코치의 동행을 금지한다. 이후 감독 어필이 시비로 인해 길어질 경우 수석코치는 나가서 만류할 수 있으나 어필할 수 없다. 어필할 경우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어필이 계속될 경우에는 수석코치에게 퇴장을 명한다.
- ③ 항의가 3분 이상 계속될 경우 감독에게 1차 경고를 실시하고, 4분이 경과될 경우에는 감독에게 퇴장을 명한다.(2021.3.16 개정)
- ④ 감독이 어필 도중 또는 어필 종료 후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철수하는 경우 원활한 경기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감독을 즉시 퇴장시킨다.(2009.6.29 규칙위원회)
- ⑤ 공격구단은 작전을 위하여 한 이닝에 2번 이상 타임을 요구할 수 없다.
- ⑥ 수버구단이 경기 중 타임을 요구하여 투수 마운드에서 작전회의를 할 때에는 30초 이내로 한다.
- ⑦ 포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정규이닝 기준 경기당 2회까지 허용하며 연장전 진행시 1회 추가 허용한다(워반시 포수교체).(2003.11.26 감독자 합의, 2018.3.5 규칙위원회)
- ⑧ 감독 또는 코치, 포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갔을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야수가 투수 마운드에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 ⑨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임을 요구할 때 심판위원은 불응해야 한다.
- ⑩ 경기 중 경기사용구를 관객에게 던지는 선수에게는 제재금을 과한다.
- ⑪ 벤치 밖에는 일체 용구를 놓아두지 못한다.
- ⑫ 경기 중 1,3루 코치의 스톱위치 사용을 금지한다.

2. 공수교대

- ① 공수교대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전력 질주한다.
- ② 전 이닝의 마지막 아웃이 되는 순간부터 다음 이닝 첫 번째공이 투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2분으로 한다. 이닝 교대시간 1분 30초가 경과된 후 주심이 투수와 포수, 대기 타석에 있는 타자에게 수신호로 마지막 연습투구라는 최종 시그널을 준다. 다음 이닝의 첫 타자는 1분 55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와야 하며, 위반시 주심은 타자에게 경고하고, 2분이 지나도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원 을 부과한다.
공수교대시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관객난입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닝 교대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의 이닝 교대시간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전광판과 덕아웃, 홈 플레이트 뒤편에 함께 연동되는 시계를 설치하고 이닝 교대시간 2분을 표시한다. 2분은 제3아웃이 되고 수비가 덕아웃을 향하여 움직일 때부터 시작되며 표시는 0초에서 시간순으로 한다.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면 시계를 멈춘다.
단, 1분 55초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2021.3.16 개정)
* 공격구단, 수비구단 선수교체, 이의제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심의 재량으로 이닝 교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11.26, 2006.4.4 감독자 합의)
- ③ 수비구단은 이닝 교대시 연습투구 종료와 동시에 라운딩을 시작한다.
- ④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는 2분 종료 후 첫 투구를 곧바로 진행한다.
- ⑤ 포수가 준비하는 동안 보조 포수나 코치가 투수의 워업을 신속하게 도와준다.
- ⑥ 클리닝 타임은 4분을 넘기지 않는다.
2분 30초에 심판은 운동장에서 준비한다.
심판 중 1명은 신속한 그라운드 정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독려한다.

3. 투수교체

- ① 경기 중 투수교체시 해당 투수는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한다. 이닝 도중 투수교체 시간은 2분 20초이다. 감독 또는 코치가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심판이 이를 허용한 시점부터 계속이 시작되며,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고 투수가 투구 준비를 시작하면 종료된다. 주심은 투수의 준비투구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2분에 마지막 연습투구를 할 것을 지시한다.
투수의 갑작스런 퇴장 또는 부상으로 투수교체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의 투수교체 시간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전광판과 덕아웃, 홈 플레이트 뒤편에 함께 연동되는 시계를 설치하고 투수교체 시간 2분 20초를 표시한다. 2분 20초는 주심이 기록원에게 통보한 순간부터 시작되며 표시는 0초에서 시간순으로 한다. 투수가 연습투구를 끝내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온 후 시계를 멈춘다. 타자는 2분 15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와야 하며, 2분 15초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연습투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 시계를 멈춰서는 안된다.(2017.2.2, 2018.3.5 규칙위원회, 2021.3.16 개정)
- ②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핫수는 투수교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2회까지로 한다(위반시 투수교체). 단, 투수가 타구에 맞았거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은 마운드 방문 핫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벤치에서 타임 요청 후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포수가 올라갔을 경우 : 감독 또는 코치 1번
- 포수가 타임 요청 후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감독 또는 코치가 올라갔을 경우 : 감독 또는 코치, 포수 각 1번
마운드 방문시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며, 각 방문 시간은 30초로 제한한다. 방문 시간은 감독 또는 코치가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심판이 이를 허용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30초가 경과한 시점에서 심판은 이를 통보하고 감독 또는 코치는 즉시 덕아웃으로 돌아가야 한다.(2001.7.16, 2003.11.26, 2018.3.22 감독자 합의, 2021.3.16 개정)
- ③ 한 투수에게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두 번 올라갈 경우 반드시 투수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감독 또는 코치는 즉각 심판위원에게 다음 투수를 통보하고, 등판예정 투수는 감독 또는 코치와 함께 동시에 마운드로 향한다.

4. 투수

- ① 이닝 교대(2분) 및 투수교체 시간(2분 20초) 이내에 한해 투수의 준비투구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2018.3.5. 규칙위원회)
- ② 투수는 포수로부터 공을 받으면 투수판을 밟고 사인을 교환하고 즉시 투구하여야 한다.
- ③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고 볼로 판정한다. 시간 계측을 위하여 2루심에게 초시계를 휴대시키며 2루심의 계측은 투수가 공을 받은 후 타자가 타석에서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며 계측이 끝나는 시점은 투수가 자유로운 다리를 드는 순간으로 한다.(2003.11.26 감독자 합의, 2018.3.5. 규칙위원회)
- ④ 투수는 불필요한 견제구를 자제한다.
- ⑤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타자 타이밍을 뺏는 지연행위시 주심이 판단하여 타임 선언 후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 경고, 세 번째는 보크로 판정한다.
- ⑥ 투수는 로진을 과도하게 묻히거나, 다른 곳(팔, 모자, 바지 등)에 묻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로진을 집어 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투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
- ⑦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
- ⑧ 경기 중에 불필요한 볼 교환을 금지한다. 한 이닝에 투수 1명당 처음 주심이 던져준 새 공을 제외하고 투수의 새 공 교환은 3개까지로 한다(단, 우천시 제외).(2003.11.26, 2006.4.4, 2018.12.10 감독자 합의)
- ⑨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4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투수가 별도로 투구하지 않더라도 볼넷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동 고의4구 임을 전광판을 통해 알린다.(2018.3.5. 규칙위원회)

5. 타자

- ①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은 불허하고 타자는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은 타석 안에 있어야 한다. 위반 시 주심은 타자에게 벌금 20만 원을 부과한다.
*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
 - a.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 b. 타격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경우
 - c.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우
 - d. 양 구단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경우

- e.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 f.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
- g.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우
- h.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경우
- i. 포수가 수비지휘를 위해 포수석을 벗어났을 경우
- j. 부상 또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트교환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경우
- k.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경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 되었을 경우
- l.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경우
(2003.11.26, 2006.4.4 감독자 합의, 2018.11.16. 규칙위원회)
- ② 타석에 있는 타자는 덕아웃이나 작전코치의 사인을 보기 위해 타석을 벗어나지 않는다.
- ③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는 2개의 배트를 여분으로 미리 준비한다.(2018.3.5. 규칙위원회)
- ④ 대기 타석에 나올 수 있는 선수는 타석에 있는 선수의 다음 타자만으로 제한한다.
(2002.7.29 수석코치 합의)
- ⑤ 대기타자 및 대타자는 신속하게 타석으로 이동한다.
- ⑥ 홈구단 타자는 BGM 시작 후 10초 이내, 원정구단 타자는 장내 아나운서 소개 후 10초 이내로 타석에 들어와야 한다. 위반 시 주심은 타자에게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타자 소개 후 대타나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 ⑦ 경기 도중 타격용 스프레이는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한다.
- ⑧ 주심은 타자가 적극적으로 투구를 피하지 않고 고의로 맞았을 경우 해당 타자에게 몸에 맞는 공을 선언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를 맞았을 경우 스트라이크로 선언하고, 볼을 맞았을 경우 볼로 선언한다.
- ⑨ 타자는 볼넷이나 죽구시 보호대 등의 용구를 타석에서 탈착한 후 뛰어서 1루에 출루한다(타자 부상시 제외).(2017.2.2. 규칙위원회)

6. 기타

- ① 경기개시 이후 각종 시상식은 금지된다.
- ② 스피드업을 위하여 감독, 코치, 선수가 적극 참여한다.
- ③ KBO는 경기 스피드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경기 스피드업 조항을 위반한 선수의 자료를 구단에 통보하고 월 1회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경기시간 10분 단축을 모토로 삼고, 시즌 전 선수단에 경기 스피드업을 위한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덕아웃과 라커룸에 경기 스피드업 핵심사항을 부착한다.

빠르고 공정한 경기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약속!

SPEED UP! UP! UP!

주자가 없을 때 12초 이내 투구



첫 번째 위반 시 경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볼 판정 & 제재금 20만원

(2루심의 계측은 투수가 공을 받은 후 타자가 타석
에서 준비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며, 계측이 끝나는
시점은 투수가 자유로운 다리를 드는 순간으로 함)



이닝 중 투수 교체 2분 20초

타자는 2분 15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가야 함

마운드 방문 시간



감독, 코치, 선수의 마운드 방문은 30초 이내



이닝교대 시간 2분 엄격 적용

이닝교대 시간 1분 55초가 지나도 첫 타자
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경고, 2분 초
과 시 제재금 20만원 부과

10초 이내 타석 입장



홈팀 타자는 BGM 시작 후 10초 이내, 원정
팀 타자는 장내아나운서 소개 후 10초 이내
타석에 입장 해야함
타자가 이를 위반할 시 제재금 20만원 부과



타석에 들어선 후 최소 한발은 타석에!

타자는 타석에 들어선 후 최소 한발은 타석
에 두어야 하며, 타자가 이를 위반할 시 제재
금 20만원 부과



볼넷, 死구 시 뛰어서 출루!

- 볼넷 사구시 뛰어서 출루
- 보호대는 타석에서 탈출 후 뛰어서 1루에 출루



자동 고의4구

-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4구 의사를 전달하
는 경우 타자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신속
하게 1루로 진루
(해당 상황 발생 시 전광판을 통해 고지)
-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후 신청이 가능하며,
볼 카운트가 진행된 후에도 신청 가능함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

-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 타격 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경우
-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우
- 양구단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경우
-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
-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우
-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경우
- 포수가 수비자위를 위해 포수석을 벗어났을 경우
- 부상 또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트 교환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경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
되었을 경우
-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경우

chapter 07

KBO 표창규정

*2021 KBO 리그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BO 소속 구단 및 선수, 심판위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표창의 종류

- 표창의 종류는 구단표창, 개인표창, KBO 기록상 또는 KBO 기념상으로 나눈다.
- 구단표창 및 연도 우승구단에 대한 표창
- 개인표창 및 통산성적에 의한 제5조에 해당하는 선수 및 연도 우수심판위원에 대한 표창
- KBO 기록상 및 KBO 기념상은 제11조에 정하는 표창을 말한다.

제3조 표창의 시기 및 장소

- 구단표창 및 개인표창은 KBO가 적당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 KBO 기록상 및 KBO 기념상의 표창은 해당선수(또는 구단)의 홈 그라운드에서 총재가 지정한 일시에 실시한다.

제4조 표창방법

- 구단표창은 표창장 및 트로피 또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개인표창에는 표창장 및 부상으로 기념품을 시상한다.
- KBO 기록상 및 KBO 기념상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기념품을 시상한다.

제5조 개인표창 종목 및 선출방식

표창종목	선출방식	비고
KBO MVP	기자단 투표	한국야구기자회 투표인단
KBO 평균자책점상	기록 의거	제10조 자격 해당자
KBO 승률상	"	10승 이상 투수
KBO 승리상	"	
KBO 세이브상	"	
KBO 탈삼진상	"	
KBO 홀드상	"	
KBO 타율상	"	제10조 자격 해당자
KBO 홈런상	"	
KBO 타점상	"	
KBO 득점상	"	
KBO 안타상	"	
KBO 출루율상	"	제10조 자격 해당자
KBO 장타율상	"	제10조 자격 해당자
KBO 도루상	"	
KBO 페어플레이상		상별위원회 선정
KBO 신인상	기자단 투표	한국야구기자회 투표인단
KBO 감독상	기록 의거	
KBO 심판상		KBO 선정

제6조 KBO MVP

KBO MVP란 KBO 정규시즌에서 기능·정신 양면이 가장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에게 시상한다.

제7조 KBO 신인상

1. KBO 신인상이란 해당 연도의 KBO 정규시즌에서 신인 선수로 출장하여 기능·정신 양면에서 가장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에게 시상한다.
2. 전 항의 신인선수란 KBO 소속구단의 선수로서 다음과 같은 누계 출장수를 초과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 5년 이내(당해 연도 제외)
 - 투수는 30회 이내(당해 연도 제외)
 - 타자는 60타석 이내(당해 연도 제외)
 - 단, 외국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었던 선수는 신인선수에서 제외된다.

제8조 KBO 페어플레이상

KBO 페어플레이상이란 KBO 정규시즌에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진지한 경기태도와 판정승복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KBO 리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선수에게 시상한다.

제9조 KBO 심판상

KBO 심판상이란 정확한 판정기술과 명확한 표현력, 엄정한 태도에 따른 원활한 경기운영능력, 분쟁처리능력 등을 종합 겸비한 심판에게 시상한다.

제10조 자격

1. 개인표창 종목 중 규정투구횟수 및 규정타석수는 공식야구규칙에 따른다.
2. 공식야구규칙에서 정하는 규정투구횟수 및 규정타석수가 실정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연도 KBO 리그의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개인표창 종목 중 고의적 기록 작성으로 인한 타이틀 획득시 시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KBO 기록상 및 KBO 기념상

1. KBO 기록상은 총재가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구단에 수여한다.
 2. KBO 기념상은 다음과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립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① 1천안타(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 ② 1천득점(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 ③ 1백호출루(및 100을 증가하는 단위)
 - ④ 2천루타(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 ⑤ 1천타점(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 ⑥ 4백도루(및 50을 증가하는 단위)
 - ⑦ 1천경기 출장(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 ⑧ 사이클링 안타
 - ⑨ 1백승리투수(및 50을 증가하는 단위)
 - ⑩ 1백세이브투수(및 50을 증가하는 단위)
 - ⑪ 1천탈삼진(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 ⑫ 2천이닝투구(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 ⑬ 투수 5백경기 출장(및 100을 증가하는 단위)
 - ⑭ 무안타 무득점경기 투수(9회 이상 완투)
 - ⑮ 완전경기(9회 이상 완투)
 - ⑯ 1백홀드(및 100을 증가하는 단위)
 - ⑰ 심판위원 기록위원 1천경기 출장(및 500을 증가하는 단위)
 - ⑱ 기타 총재가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제12조 홀드규정 생략

제13조 KBO 골든글러브상

각 연도의 수비, 공격, 인기도를 종합한 수상자를 투표인단이 선정한다.
시상일은 12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한다.

제14조 제3자로부터의 표창

KBO 이외의 제3자가 구단표창, 개인표창, KBO 기록상 또는 KBO 기념상에 대하여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그 행위가 KBO의 위신을 실추하거나 또는 현저한 상업 목적으로 편중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의 결정은 총재가 한다.

chapter 08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안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개요



선수협 창립

- 2000년 선수협 창립 총회
- 2013년 선수협 사단법인 설립

선수협의 역할

- 선수 권익 보호
- 선수복지 향상
-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 초상권 계약 및 분배
- 사회공헌 사업

선수행동수칙

- 부정행위 금지(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 승부조작 제안을 받은 경우, 선수협 또는 KBO에 즉시 신고
 - 현역 선수의 스포츠 토토 참여는 불법
 - 품위유지의무
 - 금지약물, 음주운전, 폭행 등의 품위손상행위는 선수생명 위협될 정도의 제재 있음

• 팬서비스는 선수의 기본자세

- 팬들이 있어야 프로야구가 있음
- 팬서비스가 상황상 어려운 경우, 반드시 양해를 구할 것
-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일 것

선수의 권리와 의무 (선수계약서 및 야구규약)

계약기간

- **활동기간** :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비활동기간의 단체훈련금지** : 구단의 지시 하의 단체훈련은 금지됨
 - 선수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단시설을 활용하여 개인훈련하는 것은 허용됨
 - 예외 : 신인선수, 군제대선수, 재활선수, 육성선수, 기타 선수협 결정에 따라 확인된 선수

연봉

- 연봉 합의, 선수계약서 작성, 반드시 계약서 1부를 선수가 받아야 함
- 등록선수 연봉은 시즌 중에 방출돼도 모두 보장받음(단, 선수가 원해서 하는 방출은 안됨)
 - 육성선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연봉이 보장됨
 - 2021년부터 최저연봉 3,000만원으로 인상
- **연봉 조정 신청**
 - 신청자격 : KBO 등록 3년이 지난 선수
 - 매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구단을 통해 연봉 조정 신청
 - 연봉 조정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봉산출 근거를 KBO에 제출해야 함
 -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연장
 - 연봉 조정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KBO총재가 지명, 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내 결정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선수 또는 구단이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가 원하는 연봉으로 연봉 결정
 - 자료를 당사자가 모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봉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봄
 - 연봉 조정 결과를 구단이 거부하면 신청한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선수가 거부하면 임의탈퇴 선수로 됨
 - 연봉 조정 신청은 선수협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연봉증액제도**
 - 연봉이 5,000만원 미만인 선수가 1군 등록한 경우, 등록기간동안 5,000만원 연봉에 해당 하는 일당을 받음

• 연봉감액제도

- 3억원 이상 연봉자의 경우,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 사유로 1군 말소 시, 말소기간 동안 매일 연봉의 1/300의 50%가 감액됨
- 감액적용시기 : 타자-개막일로부터, 투수-개막전 포함 7경기 치른 후부터
- 부상의 경우, 치료와 재활이 끝날 때까지는 적용 안함. 다만, 치료와 재활이 끝난 후, 퓨처스
- 경기 등록 후, 15일이 지난 날부터는 감액이 시작됨
- 퓨처스 경기에서 다시 부상당한 경우, 치료와 재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 감액이 시작됨

보류명단

- 구단이 내년 시즌에 소속선수로 포함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선수 명단으로, 11월 25일까지 KBO에 제출하는 명단
- 육성선수도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육성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내년 시즌에도 계속 그 구단 소속이 됨
- 11월 25일 보류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는 11월 30일에 자유계약선수가 됨
- 보류 명단에 없는 선수는 1년간 해당 구단과 육성선수 계약할 수 없고, 타 구단과 당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월 31일까지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함
- 보류수당 : 보류선수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직전 연봉의 300분의 1 X 25% X 보류일수
- 군보류수당은 선수연봉의 25%를 지급하되, 최대 1,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은 10개월로 함

웨이버

- 시즌 중에 선수를 방출할 경우, 웨이버 절차를 통해 방출을 해야함
- 웨이버 선수는 그해 구단 순위 역순으로 다른 구단의 지명에 의해 이적할 수 있음
- 구단이 웨이버 신청을 하고 KBO가 공시한지 7일 이내에 계약하는 구단이 없으면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잔여연봉을 보장받지만 그 시즌에는 출장할 수 없음

임의탈퇴

- 선수가 선수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구단이 이를 받아들여 선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연봉을 받지 못하고, 1년 후에 등록할 수 있음
- 구단은 임의탈퇴 기간 중에 임의탈퇴 말소하고 선수를 방출할 수 있음
- 보통 선수가 은퇴할 때 하는 것이지만 연봉 조정 결과를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해당됨

공인선수대리인(에이전트)

선수협 공인선수대리인

- 구단과 연봉협상(선수계약), 연봉 조정 신청 대리는 반드시 선수협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공인선수대리인만이 할 수 있음
- 매니지먼트 업무(광고, 스폰서 계약)는 공인선수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공인선수대리인은 아님
- 공인선수대리인은 구단 당 3명, KBO 전체 15명을 초과한 선수들과 계약을 할 수 없음
- 연봉 5,000만원 이하 선수의 경우, 프로스포츠협회 공익 에이전트 제도를 이용하면, 연봉 협상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기타

경조휴가(2019년 1월 15일자 신설)

- 선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 출생을 사유로 경조 휴가를 최대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선수가 현역선수일 경우, 현역선수등록이 말소되지만 휴가 기간(최대 5일까지)을 현역선수등록일수로 인정받는다. 해당선수는 경조 휴가가 부여된 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현역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현역선수의 등록이 말소된 선수가 타구단에 양도될 경우, 말소 공시일로부터 만 10일이 경과되지 않아도 양수구단의 현역선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부상자 명단(2020년 1월 10일 → 2020년 12월 8일 개정)

- 현역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KBO 리그 정규시즌 경기 또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할 경우 10일, 15일, 30일 중 택일하여 부상자 명단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 명단 등재는 당해 시즌에 현역선수로 1일 이상 등록된 부상선수에 한해 시즌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10일 3회, 15일 2회, 30일 1회에 한함) 선수의 엔트리 말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단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최대 3일 소급 적용).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현역선수등록이 말소되지만 이 기간을 현역선수 등록일수로 인정받는다. 단,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등록된 일자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해야 현역선수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이상 '2021 KBO 리그 규정 제14조' 중 발췌

KBO 리그 주요 연간 일정

- 1월 10일(18:00) : 연봉 조정 신청 마감
- 1월 15일(18:00) : 조정 신청 자료 제출 마감
- 1월 31일 : 선수 등록 마감
- 2월 1일 : 전지훈련 시작일
- 5월 1일 : 육성선수 KBO 리그 등록 가능일
- 7월 31일 : 선수계약 양도 양수 마감
- 8월 1일 이후 : 웨이버에 의한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음
-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 : FA자격선수 공시일
- 11월 25일 : 보류선수 신청마감 / 외국인선수 재계약 의사통지 마감
- 11월 30일 : 보류선수 명단 공시
- 11월 말(격년제) : 2차 드래프트 (2019, 2021...)
- 12월 초 : 선수협 총회, 시상식 / 유소년 야구 클리닉
- 12월 1일 ~ 1월 31일 : 비활동기간

선수협 연락처 및 회원 서비스

-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 02-707-1993
- 홈페이지 : <http://kpbpa.com>
- 회원정보시스템 : <http://kpbpamember.com>
-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검색 후 채널추가
 - 초상권료(연차, 금액 등) 관련 문의
 - 선수 협회비 납부 내역 확인
 - 회원 확인 증명서 발급
 - 경조사 공지 요청 및 화환 신청
 - 공인선수대리인 소개
 - 선수고충신고



프로선수들에게 묻는다! 클린베이스볼 Q&A

01 다음 중 '유해행위'가 아닌 것은?

- ① 경기에 있어 고의적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행위
- ②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③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 중의 내기나 도박을 신고하는 행위
- ④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02 다음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범죄, 병역 비리, 인종차별, 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 ① 품위손상행위 ② 승부조작 ③ 불법 스포츠 도박 ④ 사해행위

03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욕설, 침 뱉는 행위
- ② 경기 중 씹는 담배의 휴대 및 사용
- ③ 경기 중 관객, 심판, 상대구단 선수단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
- ④ 경기장 밖에서 구단 관계자와의 친목적 태도

04 다음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무엇인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감독, 심판 등 경기의 참여자가 경기 중 일부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의 최종 결과나 과정을 미리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불법도박 ② 타로점 ③ 승부조작 ④ 집단응원

05 승부조작 및 경기조작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 ① 성폭력 ② 불법 스포츠 도박 ③ 음주운전 ④ 도핑

06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다음 중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0.2% 이상 ② 0.08~0.2% ③ 0.03~0.08% ④ 0.01~0.03%

07 음주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다.
- ② 술을 마시기 전, 차를 가져가지 않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③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
- ④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하면 설득하여 말린다.

08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다음 중 육체적인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폭력 행위는 무엇인가?

- ① 성폭행 ② 성추행 ③ 성희롱 ④ 성매매

09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이길 수 없는 구조 ② 청소년이용자, 도박중독자 양산
- ③ 또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수단 ④ 동료 간 단합심 증대

10 승부조작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은?

- ① 구단 및 KBO 클린베이스볼센터 등에 즉시 통보한다.
- ② 팀 관계자 혹은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다.
- ③ 승부조작 관련 상담/신고 센터를 피한다.
- ④ 불법도박과 연결하기 위해 동료를 유혹한다.

정답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① 08 ② 09 ④ 10 ①

10

클린베이스볼 신고센터 및 주요 연락처

-
1. 클린베이스볼 신고센터 및 주요 연락처
 2. 자료 출처



chapter
01

클린베이스볼 신고센터 및 주요 연락처



주요 신고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스포츠윤리센터 ☎ 1670-287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 사행행위 신고 ☎ 1855-0112
 - 도박 문제 전문 상담 ☎ 1336
- 국민체육진흥공단
 - 불법 스포츠포토 신고센터 ☎ 1899-1119
 - 온라인 신고센터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 한국 도핑방지위원회(KADA) ☎ 02-2045-9882
 - 온라인 신고센터 <https://kada-ad.or.kr>



프로야구

한국야구위원회(KBO)

- 클린베이스볼센터 ☎ 02-3460-4699
 - 온라인 신고센터 <https://www.cleankbo.com>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 02-707-1993
-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 02-421-6971
- 일구회 ☎ 02-412-9701



아마야구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 02-572-8411
- 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588-9128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1388
-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형) ☎ 02-3672-0365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지정병원

- **올림픽병원**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4 10
- 윤석조 본부장 ☎ 010-2609-2119
- **참포도나무병원**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7
- 전성욱 팀장 ☎ 010-5375-3997
- **구로성심병원**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76-189
- 박철웅 실장 ☎ 010-2722-0166
- **강서웰튼병원**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77
- 김송이 팀장 ☎ 010-6786-9293
- **램브란트치과**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23 크레온빌딩 2층
- 권혁길 이사 ☎ 010-2928-7579
- **광주수완병원**
-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1
- 송용국 실장 ☎ 010-2783-6168
- **국제바로병원**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32
- 박준영 팀장 ☎ 010-2010-1451
- **연수늘밝은안과**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6 스퀘어원 3층
- 이유정 실장 ☎ 010-8336-0409
- **부산부민병원**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 박백현 팀장 ☎ 051-330-3132
- **으뜸병원**
- 대구시 중구 수동 30
- 최봉근 부장 ☎ 010-8568-7141
- **보다안과**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타워 5층
- 김영석 팀장 ☎ 010-7117-7335
- **강남서울밝은안과**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18층
- 양승신 부장 ☎ 010-7150-9089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주치의

- **연세바로척병원 원유건 원장, 이태진 원장**
- 서울 성동구 동일로 133
- 김주혁 행정부장 ☎ 010-6552-0621
- **수완센트럴병원 고길석 원장**
- 광주 광산구 수완로6
- 안아론 과장 ☎ 010-4645-8528
- **청라바른정형외과 이상훈 원장**
- 인천시 서구 청라리임로 65
- 김태훈 부장 ☎ 010-4333-4479
- **인천아시아드병원 정진호 원장**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664 메인프라자 4층
- 김유미 실장 ☎ 010-5298-2220
- **오정본병원 최희준 원장, 변해일 원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01
- 장지훈 이사 ☎ 010-4216-1974
- **인하대병원 김범수 교수**
-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 최지선 ☎ 010-2768-4778
- **건강만세365병원 강성식 원장, 도남훈 원장**
- 부산 중구 대청로 105
- 서보관 팀장 ☎ 010-2832-6154

chapter
02

자료 출처

단체명	담당 부서	참고자료
KBO	클린베이스볼센터/ 운영팀	KBO 규약, KBO 리그 규정 등
대한체육회	-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드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운영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한국프로스포츠협회(KPSA)	전략사업팀	스포츠윤리교육 강의 자료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교육홍보부	선수용 도핑방지 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공정문화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리플릿 자료 등
스포츠토토 코리아	건전운영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리플릿 자료
도박문제 관리센터	예방홍보팀	홍보 포스터 자료 등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	홍보 포스터 자료 등
질병관리청	-	방역수칙관련 자료 및 포스터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	스포츠 인권현장 참고

※ 각종 규정(제재 등)은 최신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관계자 부정행위 예방 가이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자 시스템 등록 절차

시스템 등록 시 인터넷발매사이트(베트맨) 로그인에 차단되어 예치금 환불이 불가하므로 베트맨 회원 탈퇴 후 시스템 등록을 진행합니다.

구매제한자 등록 절차

1 화면 좌측 구매·환급제한자 클릭



2 제한자 등록 클릭 후 접속



3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함 체크 클릭



4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본인인증 진행



5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소속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완료



어디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불법스포츠포토신고센터 1899-1119 | <https://cleansports.kspo.or.kr>

[불법스포츠포토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기준]

포상금 최대 5,000만원

- 1 불법스포츠포토 도박 운영자 신고 시
- 2 승부조작과 관련 부정행위를 하고 이익을 받는 자

포상금 최대 1,500만원

- 1 불법스포츠포토 도박사이트 설계·제작·유통자
- 2 운동경기 관련 정보제공자
- 3 불법스포츠포토 도박사이트 홍보·구매를 중개 및 알선하는 자
- 4 불법스포츠포토 도박사이트 이용자
- 5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6 투표권 구매, 알선, 양도받을 수 없는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내용이 주된 단서가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서 위반 사실을 수사하여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의 세액 공제율은 22%(소득세 20%, 기타 소득세 2%)입니다.

신고자 정보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 등 개인 정보는 불법행위 조사시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며, 공단 및 주최단체 등 조사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포츠포토신고센터 | 1899-1119

불법스포츠포토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cleansports.kspo.or.kr>

투표권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

구분	제한대상자
주최단체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주최단체 임직원
경기단체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전원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위 법령을 위반하고 투표권을 구매하거나 환급받을 경우

- **벌칙조항 제48조 제5호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구매·환급제한자 관리 시스템

- 구매·환급제한자 관리 시스템은 제한대상자들의 인터넷발매사이트 (베트맨) 및 환급대행은행으로부터 구매 및 환급을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구매·환급제한자 관리 시스템 QR코드



승부조작에 대한 벌칙 조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실행한 자

→벌칙조항 제47조 제1호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요구, 약속한 자

→벌칙조항 제48조 제2호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제공을 약속한 자

→벌칙조항 제48조 제1호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벌칙조항 제48조 제6호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불법스포츠 벌칙 조항

불법스포츠 도박 이용 행위

→벌칙조항 제48조 제3호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이 외에 불법스포츠 벌칙 조항에 속하는 자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

투표권을 구매·양도·알선 받는 자

→벌칙조항 제48조 제5호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스포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도핑

운동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함께 올바른 길을 KADA

NO 도핑

이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도박에서
내리고 싶다면...

도박,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니다

도박은 당신의 모든 것을
완전 잃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박에서 돌아서 사랑하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세요.
도박을 끊는 것만이
도박의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성폭력은 **범죄**입니다

탐지 말고 **신고**하세요
☎ 1670-2876

체육계 학교폭력 당신의 손으로 멈춰주세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세요

☎ | 1670-2876, 02-6220-1376
☎ | 1670-2876 ~ 1376
🌐 | <https://www.k-sec.or.kr>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줘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01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0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02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04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05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프로·아마추어 통합
클린베이스볼
가 이 드 북



함께하는 야구, 공정한 야구

CLEAN BASEBALL

발행 2021년 10월 14일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발행처 KBO

발행인 정지택

편집인 류대환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